

〈표3-57〉 생활보호사업 인지도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 사업 알고 있는가	예	응답	96	214	153	463
		%	72.2	77.0	60.5	69.7
	아니오	응답	37	64	100	201
		%	27.8	23.0	39.5	30.3
전 체		응답	133	278	253	664
		%	100.0	100.0	100.0	100.0

p=.000

②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표3-58〉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 사업신청 여 부	신청	응답	68	174	123	365
		%	65.4	72.5	69.9	70.2
	미신청	응답	36	66	53	155
		%	34.6	27.5	30.1	29.8
전 체		응답	104	240	176	520
		%	100.0	100.0	100.0	100.0

p=.413

③ 신청한 생활보호사업의 종류

〈표3-59〉 신청 생활보호사업 종류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어느생활 보호사업 을 신청하 였나	일반생활 보호사업	응답	39	130	85	254
		%	58.2	75.6	70.2	70.6
	한시직생활 보호사업	응답	28	42	36	106
		%	41.8	24.4	29.8	29.4
전 체		응답	67	172	121	360
		%	100.0	100.0	100.0	100.0

p=.030

④ 생활보호사업 신청후 수혜 여부

〈표3-60〉 생활보호사업신청후 수혜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 사업 수혜여부	수혜	응답	55	139	86	280
		%	75.3	79.0	72.9	76.3
	탈락	응답	18	37	32	87
		%	24.7	21.0	27.1	23.7
전 체		응답	73	176	118	367
		%	100.0	100.0	100.0	100.0

p=.473

⑤ 지원액의 규모(월 기준)

〈표3-61〉 지원액 규모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소 득 감 소	5만원 미만	응답	2	7	3	12
		%	4.2	5.14	3.6	4.5
	10만원 미만	응답	10	19	8	37
		%	20.8	13.9	9.6	13.8
	20만원 미만	응답	11	51	25	87
		%	22.9	37.2	30.1	32.5
	30만원 미만	응답	13	40	32	85
		%	27.1	29.2	38.6	31.7
	40만원 미만	응답	3	15	11	29
		%	6.3	10.9	13.3	10.8
	40만원 이상	응답	9	5	4	18
		%	18.8	3.6	4.8	6.7
전 체		응답	48	137	83	268
		%	100.0	100.0	100.0	100.0

p=.019

⑥ 생활보호사업 미신청 또는 미수혜 사유

〈표3-62〉 생활보호사업 미수혜 이유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 활 보호 사업 미수혜 이유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물라서	응답 18	22	18	58
	%	36.7	21.0	24.3	25.4
	신청방법을 물라서	응답 9	25	17	51
	%	18.4	23.8	23.0	22.4
	소득기준액 초과	응답 9	11	8	28
	%	18.4	10.5	10.8	12.3
	재산기준액 초과	응답 2	4	3	9
	%	4.1	3.8	4.1	3.9
	호적상부양의 무자가있어서	응답 1	9	5	15
	%	2.0	8.6	6.8	6.6
	결차가 까다로와	응답 7	22	14	43
	%	14.3	21.0	18.9	18.9
자존심때문에	응답 0	3	2	5	
%	0.0	2.9	2.7	2.2	
기 타	응답 3	9	7	19	
%	6.1	8.6	9.5	8.3	
전 체	응답	49	105	74	228
%		100.0	100.0	100.0	100.0

p=731

⑦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표3-63〉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 활 보호 사업의 문제점	지원액이 부족하여실질적 인도움이안됨	응답 41	89	65	195
	%	43.6	45.4	50.4	46.5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함	응답 34	57	36	127
	%	36.2	29.1	27.9	30.3
	신청및수급행정 절차너무까다로움	응답 15	41	19	75
	%	16.0	20.9	14.7	17.9
	기 타	응답 4	9	9	22
	%	4.3	4.6	7.0	5.3
전 체	응답	94	196	129	419
%		100.0	100.0	100.0	100.0

p=.539

⑧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이제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저소득 실업장애우들에게 있어서 생활보호사업은 매우 기초적인 생계유지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첫째,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모르는 실업장애우가 30.3%에 이르고 있고,

둘째, 생활보호사업을 아는 자 가운데 신청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54.2%인 365명이며,

셋째, 다시 이들은 생활보호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70.6%, 29.4%의 비율로 신청하였으며,

넷째, 신청자 가운데 280명만이 사업대상자로 되었고 나머지는 탈락하였으므로 탈락율이 24% 정도에 달하며,

다섯째,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받는 지원액은 가구당 평균 194천원이고 유형별로는 IMF형이 216천원, IMF이전이 180천원, 만성실업자가 203천원에 이르고,

여섯째, 생활보호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유무를 본인이 정확히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일곱째, 생활보호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액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한 불만을 지닌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공공근로사업

① 공공근로사업 인지 여부

〈표3-64〉 공공근로 사업 인지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 사업인지 여부	알고있음	응답 105	216	180	501
	%	80.2	80.6	70.6	76.6
모름	응답 26	52	75	153	
	%	19.8	19.4	29.4	23.4
전 체	응답	131	268	255	654
%		100.0	100.0	100.0	100.0

p=.015

②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표3-65〉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 근로사업 신청여부	신청	응답 51	90	42	183
	%	41.1	34.6	17.4	29.3
신청여부	미신청	응답 73	170	199	442
	%	58.9	65.4	82.6	70.7
전 체	응답	124	260	241	625
	%	100.0	100.0	100.0	100.0

p=.000

③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표3-66〉 공공근로 사업 참여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 근로사업 참여여부	참여함	응답 19	28	11	58
	%	35.8	29.8	24.4	30.2
참여여부	신청하였으나 탈락	응답 30	56	29	115
	%	56.6	59.6	64.4	59.9
참여여부	중도포기	응답 4	10	5	19
	%	7.5	10.6	11.1	9.9
전 체	응답	53	94	45	192
	%	100.0	100.0	100.0	100.0

p=.000

④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표3-67〉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응답 14	25	24	63
	%	17.5	12.8	11.7	13.1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서	응답 10	35	32	77
	%	12.5	17.9	15.5	16.0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	응답 6	19	17	42
	%	7.5	9.7	8.3	8.7
	일의 내용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응답 1	1	1	3
	%	1.3	0.5	0.5	0.6
	장애인에게 적합 한 일이 없어서	응답 37	103	120	260
	%	46.3	52.6	58.3	53.9
	일이 계속있는 것이 아니어서	응답 8	2	1	4
	%	5.0	4.1	1.0	2.9
전 체	응답	80	196	206	482
	%	100.0	100.0	100.0	100.0

p=.162

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 가운데 핵심인 바, 실업장애우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리하여 본다

첫째, 우선 공공근로사업을 모르는 실업장애우는 전체의 23.4%에 해당되며,

둘째,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27.2%인 183명이고 이중 공공근로사업에 직접 참여한 장애우는 신청자의 31.7%인 58명,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6%에 불과하다. 특히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이들이 신청자의 62.8%에 해당함으로써 장애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문이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은 그 사유를 장애우에게 적합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53.9%에 이르고 이밖에도 신청할 자격이 안되거나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등이 조사되었다.

(3) 실업급여

① 실업급여 신청 여부

〈표3-68〉 실업급여 신청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실업 급여 신청 여부	현재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응답	8	0	8
		%	15.1	0.0	4.9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현재 받고 있지 않다	응답	7	3	10
		%	13.2	2.7	6.1
	퇴직 당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응답	11	45	56
		%	20.8	40.9	34.4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응답	3	10	13
		%	5.7	9.1	8.0
신청하지 않음	응답	24	52	76	
	%	45.3	47.3	46.6	
전 체	응답	53	110	163	
	%	100.0	100.0	100.0	

p=.000

②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표3-69〉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실업 급여 미지급 사유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응답	13	23	36
		%	40.6	25.6	29.5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응답	5	18	23
		%	15.6	20.0	18.9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격이 안되어서	응답	3	8	11
		%	9.4	8.9	9.0
	고용보험의 내용을 몰라서	응답	6	21	27
		%	18.8	23.3	22.1
	신청하여도 안될 것 같아서	응답	1	9	10
		%	3.1	10.0	8.2
	곧 취직될 것 같아서	응답	2	3	5
		%	6.3	3.3	4.1
	기 타	응답	2	8	10
		%	6.3	8.9	8.2
전 체	응답	32	90	122	
	%	100.0	100.0	100.0	

p=.257

③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

〈표3-70〉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공공직업 훈련경험 유무	받은 적이 있다	응답	7	37	44
		%	5.8	14.7	11.8
	받고있다	응답	4	1	5
		%	3.3	0.4	1.3
	받은 적이 없다	응답	109	214	323
		%	90.8	84.9	86.8%
전 체	응답	120	252	372	
	%	100.0	100.0	100.0	

p=.004

④ 공공직업훈련 참여 종류

〈표3-71〉 공공직업훈련 참여 종류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공공 직업 훈련 내용	실업자 재취직훈련	응답	4	4	8
		%	33.3	9.8	15.1
	고용촉진훈련	응답	4	5	9
		%	33.3	12.2	17.0
	대학등 직업훈련	응답	0	1	1
		%	0.0	2.4	1.9
	기능사 양성훈련	응답	1	8	9
		%	8.3	19.5	17.0
	영농희망자 훈련	응답	0	3	3
		%	0.0	7.3	5.7
	농어민고용 촉진훈련	응답	0	2	2
		%	0.0	4.9	3.8
	실직자창업 훈련	응답	0	3	3
		%	0.0	7.3	5.7
복지관 장애인단 체등에서의 훈련	응답	3	12	15	
	%	25.0	29.3	28.3	
기 타	응답	0	3	3	
	%	0.0	7.3	5.7	
전 체	응답	12	41	53	
	%	100.0	100.0	100.0	

p=.257

⑥ 직업훈련 희망 여부

〈표3-72〉 직업훈련 희망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직업 훈련 희망 여부	그렇다	응답	75	139	214
		%	62.0	55.6	57.7
	아니다	응답	21	40	61
		%	17.4	16.0	16.4
	잘모르겠다	응답	25	71	96
		%	20.7	28.4	25.9
전 체	응답	121	250	371	
	%	100.0	100.0	100.0	

p=.279

⑥ 희망 직업훈련 종류

〈표3-73〉 희망직업훈련 종류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희망 직업 훈련 종류	창업을 위한 훈련/교육	응답	17	27	44
		%	21.8	18.9	19.9
	자영업자의 사업 능력향상훈련	응답	15	19	34
		%	19.2	13.3	15.4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응답	24	23	47
		%	30.8	16.1	21.3
	근로자의 업무 능력향상훈련	응답	4	13	17
		%	5.1	9.1	7.7
	컴퓨터관련교육	응답	15	53	68
		%	19.2	37.1	30.8
	기 타	응답	3	8	11
		%	3.8	5.6	5.0
전 체	응답	78	143	221	
	%	100.0	100.0	100.0	

p=.023

⑦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

임금근로자에게 있어서 실업 후 제1차적으로 적용되어 생활유지의 주요수단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는 금번 조사대상이 된 실업장애우에게 있어서는 매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전체 조사대상 장애우의 2.7%인 18명만이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급여대상자가 아니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공직업훈련의 경우는

첫째, 직업훈련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49명으로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7.3%에 해당하며,

둘째, 이에 비하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214명에 달해 31.8%에 해당하였고 명백히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는 61명에 불과하다.

셋째, 희망하는 교육훈련 종류에는 컴퓨터관련 교육이 가장 많은 데 주로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창업을 위한 훈련 등을 원하고 있다.

(4) 실업자 대부사업

① 대부사업의 인지 여부

〈표3-74〉 실업자대부사업 인지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 사업의 인지여부	알고 있음	응답	75	159	84	318
		%	58.1	58.5	33.7	48.9
	모름	응답	54	113	165	332
		%	41.9	41.5	66.3	51.1
전 체	응답	129	272	249	650	
	%	100.0	100.0	100.0	100.0	

p=.000

② 대부사업 신청 여부

〈표3-75〉 대부사업 신청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 사업의 신청여부	신청	응답	25	40	22	87
		%	30.1	24.2	22.4	25.1
	미신청	응답	58	125	76	259
		%	69.9	75.8	77.6	74.9
전 체	응답	31	65	98	346	
	%	100.0	100.0	100.0	100.0	

p=.463

③ 신청대부사업 종류

〈표3-76〉 신청대부사업종류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신 청 대 부 사 업 내 용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응답	12	19	9	40
		%	48.0	44.2	37.5	43.5
	주택자금(전세 금융자포함)	응답	5	10	5	20
		%	20.0	23.3	20.8	21.7
	생업자금	응답	8	9	9	26
		%	32.0	20.9	37.5	28.3
관리·기술직 실업자등의소구 모형업자원	응답	0	5	0	5	
	%	0.0	11.6	0.0	5.4	
귀농자 정착지원	응답	0	0	1	1	
	%	0.0	0.0	4.2	1.1	
전 체	응답	25	43	24	92	
	%	100.0	100.0	100.0	100.0	

p=.225

④ 대부신청 후 실제 대출 여부

〈표3-77〉 대부신청 후 실제 대출 여부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 신청후 대출여부	받 음	응답	6	16	6	28
		%	20.7	34.8	25.0	28.3
	못 받 음	응답	23	30	18	71
		%	79.3	65.2	75.0	71.7
전 체	응답	29	46	24	99	
	%	100.0	100.0	100.0	100.0	

p=.385

⑤ 대출금액 규모

〈표3-78〉 대출금액 규모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 출 금 액	500만원 미만	응답	0	2	1	3
		%	0.0	14.3	16.7	11.5
	500-1,000 만원 미만	응답	4	8	3	15
		%	66.7	57.1	50.0	57.7
	1,000-1,500 만원 미만	응답	1	3	2	6
		%	16.7	21.4	33.3	23.1
1,500-2,000 만원 미만	응답	1	0	0	1	
	%	16.7	0.0	0.0	3.8	
3,000 만원 이상	응답	0	1	0	1	
	%	0.0	7.1	0.0	3.8	
전 체	응답	6	14	6	26	
	%	100.0	100.0	100.0	100.0	

p=.686

⑥ 대출받지 못한 이유

〈표3-79〉 대출받지 못한 이유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 출 받 지 못 한 이 유	담보가 없어서	응답	11	14	7	32
		%	47.8	37.8	33.3	39.5
	신용보증인이 없어서	응답	6	9	7	22
		%	26.1	24.3	33.3	27.2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0	2	0	2
		%	0.0	5.4	0.0	2.5
	재산세 과세액 초과	응답	1	0	1	2
		%	4.3	0.0	4.8	2.5
	신청서류의 자격요건 미달	응답	4	6	1	11
		%	17.4	16.2	4.8	13.6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0	3	1	4	
	%	0.0	8.1	4.8	4.9	
기 타	응답	1	3	4	8	
	%	4.3	8.1	19.0	9.9	
전 체	응답	23	37	21	81	
	%	100.0	100.0	100.0	100.0	

p=.507

⑦ 대출신청을 안한 이유

〈표3-80〉 대출신청 안한 이유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몰라서	응답 15	25	15	55
	%	23.1	16.7	16.5	18.0
	구직동향을 하지 않아서	응답 1	1	4	6
	%	1.5	0.7	4.4	2.0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응답 11	35	15	61
	%	16.9	23.3	16.5	19.9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험악해서	응답 20	44	24	88
	%	30.8	29.3	26.4	28.8
상환부담 때문에	응답 13	26	19	58	
%	20.0	17.3	20.9	19.0	
별도율이 안 될 것 같아서	응답 4	12	8	24	
%	6.2	8.0	8.8	7.8	
기 타	응답 1	7	6	14	
%	1.5	4.7	6.6	4.6	
전 체	응답	65	150	91	306
%		100.0	100.0	100.0	100.0

p=.600

⑧ 대부사업의 문제점

〈표3-81〉 대부사업의 문제점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 사정의 문제점	대출금액이 너무 적음	응답 1	4	3	8
	%	1.2	2.4	3.1	2.3
	재산, 담보 등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움	응답 50	95	50	195
	%	61.7	56.2	51.0	56.0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응답 11	25	11	47
	%	13.6	14.8	11.2	13.5
	이자율이 너무 높음	응답 2	10	5	17
	%	2.5	5.9	5.1	4.9
	대부금 상환기간이 짧음	응답 7	12	3	22
	%	8.6	7.1	3.1	6.3
잘 모르겠다	응답 10	16	24	50	
%	12.3	9.5	24.5	14.4	
기타	응답 0	7	2	9	
%	0.0	4.1	2.0	2.6	
전 체	응답	81	169	98	348
%		100.0	100.0	100.0	100.0

p=.071

⑨ 대부사업에 대한 평가

실업자 대부사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장애우들의 생각은

첫째, 우선 대부사업자체를 모르는 장애우가 응답조사자의 50%가 넘는 332명에 이르렀고, 둘째,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 대부사업에 신청한 장애우는 87명, 전체 응답자의 12.9%에 불과하였으며,

셋째, 대부신청후 대출을 받은 자는 28명에 해당되어 결국 대부사업의 수혜자는 전체의 4.2%에 그치며, 대부를 받은 자의 평균 대부금액은 78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대부를 받지 못한 사유로는 담보가 없거나 신용보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다섯째, 신청절차가 까다롭거나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 신청을 아예 하지도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섯째, 이러한 자격조건이나 행정절차의 까다로움이 대부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으로 응답자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5) 새로운 정부프로그램

① 긴급의료비 지원

〈표3-82〉 정부프로그램중 긴급의료비 지원 필요성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긴 급 의료비 지원	매우 필요	응답 60	135	126	321
	%	51.7	54.2	55.8	54.3
	필요	응답 30	71	66	167
	%	25.9	28.5	29.2	28.3
	보통	응답 19	31	22	72
	%	16.4	12.4	9.7	12.2
불필요	응답 6	7	9	22	
%	5.2	2.8	4.0	3.7	
전혀 불필요	응답 1	5	3	9	
%	0.9	2.0	1.3	1.5	
전 체	응답	116	249	226	591
%		100.0	100.0	100.0	100.0

p=.717

② 긴급식품권 지원

〈표3-83〉 긴급식품권 지원 필요성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긴 급 식 품 권 지 원	매우 필요	응답	34	103	82	219
		%	30.1	41.5	36.6	37.4
	필 요	응답	43	92	85	220
		%	38.1	37.1	37.9	37.6
	보 통	응답	27	41	45	113
		%	23.9	16.5	20.1	19.3
	불 필요	응답	8	9	9	26
		%	7.1	3.6	4.0	4.4
	전혀 불필요	응답	1	3	3	7
		%	0.9	1.2	1.3	1.2
전 체	응답	113	248	224	585	
	%	100.0	100.0	100.0	100.0	

p = .488

③ 구직활동비 보조

〈표3-84〉 구직활동비 보조 필요성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구 직 활 동 비 보조	매우 필요	응답	51	111	90	252
		%	44.3	45.5	40.5	43.4
	필 요	응답	34	83	70	187
		%	29.6	34.0	31.5	32.2
	보 통	응답	25	38	43	106
		%	21.7	15.6	19.4	18.2
	불 필요	응답	3	7	13	23
		%	2.6	2.9	5.9	4.0
	전혀 불필요	응답	2	5	6	13
		%	1.7	2.0	2.7	2.2
전 체	응답	115	244	222	581	
	%	100.0	100.0	100.0	100.0	

p = .563

④ 세금 및 공과금 감면/면제

〈표3-85〉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및 면제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세 금, 공 과 금 감 면 / 면 제	매우 필요	응답	59	144	134	337
		%	51.3	58.5	60.6	57.9
	필 요	응답	39	72	58	169
		%	33.9	29.3	26.2	29.0
	보 통	응답	12	24	20	56
		%	10.4	9.8	9.0	9.6
	불 필요	응답	3	5	8	16
		%	2.6	2.0	3.6	2.7
	전혀 불필요	응답	2	1	1	4
		%	1.7	0.4	0.5	0.7
전 체	응답	115	246	221	582	
	%	100.0	100.0	100.0	100.0	

p = .619

⑤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표3-86〉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다 양 한 구 인 정 보 제 공	매우 필요	응답	46	101	66	213
		%	40.7	43.0	31.4	38.2
	필 요	응답	31	79	67	177
		%	27.4	33.6	31.9	31.7
	보 통	응답	27	38	58	123
		%	23.9	16.2	27.6	22.0
	불 필요	응답	4	15	14	33
		%	3.5	6.4	6.7	5.9
	전혀 불필요	응답	5	2	5	12
		%	4.4	0.9	2.4	2.2
전 체	응답	113	235	210	558	
	%	100.0	100.0	100.0	100.0	

p = .023

⑥ 장애인에 대한 의료대책

〈표3-87〉 장애인에 대한 의료대책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소 속 감 소	30만원 미만	응답	11	16	10	37
		%	9.6	6.2	4.4	6.2
	30-50만원 미만	응답	31	64	48	143
		%	27.2	24.8	21.1	23.8
	51-100만원 미만	응답	22	40	50	112
		%	19.3	15.5	21.9	18.7
	100-150만원 미만	응답	25	80	73	178
		%	21.9	31.0	32.0	29.7
150-200만원 미만	응답	20	48	39	107	
	%	17.5	18.6	17.1	17.8	
200만원이상	응답	5	10	8	23	
	%	4.4	3.9	3.5	3.8	
전 체	응답	114	258	228	600	
	%	100.0	100.0	100.0	100.0	

p=.381

⑦ 새로운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실업대책 프로그램 중 긴급의료비, 긴급식품비 등 몇가지를 응답자에게 제시해 본 결과

첫째, 긴급의료비의 필요성은 82.6%가, 긴급식품비는 75.0%가, 구직활동비 보조는 75.6%가, 제세공과금의 면제나 감면은 86.95가, 다양한 구인정보제공은 69.9%가 동의하였다. 둘째, 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으로서는 긴급의료비 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그리고 의료보험료 감면 및 보건소의 무료진료, 보장구 무료 제공 및 수리 등이 절실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6) 실업대책의 개선사항

① 실업대책의 기본 방향

〈표3-88〉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실업 대책에 대한 의견	고용유지, 정출대책에 더 중점되어야	응답	52	85	51	188
		%	43.0	31.4	21.8	30.0
대 환 의 견	생활안정대책에 더 중점 두어야	응답	69	186	183	438
		%	57.0	68.6	78.2	70.0
전 체	응답	121	271	234	626	
	%	100.0	100.0	100.0	100.0	

p=.000

②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표3-89〉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고용안정 대책중 핵심사업	직업훈련 프로 그램의 확대	응답	5	26	13	44
		%	7.5	19.4	16.9	15.8
	공공직업소개 취업정보제공	응답	9	16	6	31
		%	13.4	11.9	7.8	11.2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	응답	35	53	34	122
		%	52.2	39.6	44.2	43.9
	기 업 고용안정지원	응답	7	12	9	28
		%	10.4	9.0	11.7	10.1
	개인의 사업 자금융자	응답	11	26	14	51
		%	16.4	19.4	18.2	18.3
기 타	응답	0	1	1	2	
	%	0.0	0.7	1.3	0.7	
전 체	응답	67	134	77	278	
	%	100.0	100.0	100.0	100.0	

p=.596

③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표3-90〉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 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 활 안 정 대 책 중 핵 심	공공근로사업	응답	4	12	5	21
		%	4.7	5.5	2.5	4.2
	고용보험대상 확대 및 수준제고	응답	1	2	2	5
		%	1.2	0.9	1.0	1.0
	의료보험료 50%지원	응답	3	12	8	23
		%	3.5	5.5	4.0	4.6
	생활보호 확대	응답	26	85	93	204
		%	30.6	38.6	46.7	40.5
	생계비 대부 사업 확대	응답	15	34	34	83
		%	17.6	15.5	17.1	16.5
	장애인 관련 서비스 확충	응답	16	53	39	108
		%	18.8	24.1	19.6	21.4
	생업자금 융자	응답	18	20	15	53
		%	21.2	9.1	7.5	10.5
	노숙자 보호	응답	1	1	0	2
		%	1.2	0.5	0.0	0.4
	각종 상담사업	응답	1	1	2	4
		%	1.2	0.5	1.0	0.8
기타	응답	0	0	1	1	
	%	0.0	0.0	0.5	0.2	
전 체	응답	85	220	199	504	
	%	100.0	100.0	100.0	100.0	

p=147

④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이 된 저소득 실업장애우들은 현재의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첫째, 먼저 현재의 실업대책을 고용유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 생활안정대책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고 극단적으로 물었을 때 30.0%와 70.0%로 응답하여 생활안정대책이 더 요구된다고 하였다.

둘째, 고용안정대책 가운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이 당연히 가장 우선시되며 이외에 개인 사업자금융자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차례로 요구하였다.

셋째,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는 생활보호사업의 확대가 가장 먼저 선호되었고 장애우관련서비스의 확충이나 생업자금융자 등의 순으로 요구되었다.

제 4 장 장애유형별 실태조사결과

1. 인구학적 특성 및 실직전 상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① 성별 분포

〈표 4-1〉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 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성별	남	응답	398	33	64	19	514
		%	79.1	76.7	63.4	76.0	76.5
	여	응답	105	10	37	6	158
		%	20.9	23.3	36.6	24.0	23.0
전 체	응답	503	43	101	25	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장애우에 대한 조사에 응한 응답자 중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장애유형별로 볼 때 지체장애우의 경우가 79.1%는 남성, 나머지 20.9%는 여성으로 분포된 반면 시각장애우는 63.4%만이 남성이고 여성이 36.6%에 이른다. 주로 대부분의 장애유형에 있어서 남성이 60-70% 정도의 구성비를 보이며 반면 여성은 30-40%정도로 구성되고 있다.

② 연령별 분포

실직장애우의 연령은 주로 30대-50대에 집중되어 있다. 평균연령이 45.5세인 것에 비하여 지체장애우는 44.3세,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46.5세, 시각장애우 53.8세, 그리고 정신지체가 36.5세로서 시각장애우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고 정신지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은 상태를 보여준다.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전체의 33.7%인 33명에 이르고 반면 정신지체는 20대가 40.0%인데 비하여 60세이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30대가 지체는 25.7%, 청각 및 언어는 25.6%, 정신지체는 28%인 데 비하여 시각은 고작 10.2%만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50대 이상의 경우 시각은 65.3%인 데 비하여 지체장애우는 29.1%, 청각 및 언어 44.2%, 시각장애우 65.3%로 각기 나타나고 있다.

〈표4-2〉 장애유형별 연령 분포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연령	10대	응답	1	0	0	0	1
		%	0.2	0.0	0.0	0.0	0.1
	20대	응답	14	34	3	2	10
		%	6.8	7.0	2.0	40.0	7.3
	30대	응답	129	11	10	7	157
		%	25.7	25.6	10.2	28.0	23.5
	40대	응답	192	10	22	4	228
		%	38.2	23.3	22.4	16.0	34.1
	50대	응답	102	12	31	3	148
		%	20.3	27.9	31.6	12.0	22.2
	60대 이상	응답	44	7	33	1	85
		%	8.8	16.3	33.7	4.0	12.7
전체		응답	502	43	95	25	668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학력 분포

〈표 4-3〉 장애유형별 학력 분포

항 목		유형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학력	무학	응답	65	10	26	4	105
		%	13.0	23.3	26.5	16.0	15.8
	초등졸	응답	133	12	25	7	177
		%	26.6	27.9	25.5	28.0	26.6
	중졸	응답	140	10	25	6	181
		%	28.0	23.3	25.5	24.0	27.2
	고졸	응답	130	10	16	8	164
		%	26.0	23.3	6.1	32.0	24.6
	전문대졸 이상	응답	32	1	6	0	39
		%	6.4	2.3	6.1	0.0	5.9
전체		응답	500	43	98	25	666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유형별 학력수준을 보면 저학력수준이 완연히 나타나고 있다. 무학인 경우가 평균 15.8%에 이르며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가 26.5%, 청각 및 언어장애가 23.3% 수준이 무학이며 정신지체 장애의 16.0%, 지체장애의 13.0%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고졸이상의 학력은 지체장애가 32.4%, 정신지체 32.0%, 청각 및 언어장애 25.6%, 그리고 시각장애가 22.4%나 되어 지체장애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고 시각장애가 가장 낮은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④ 거주지 분포

〈표4-4〉 장애유형별 거주지 분포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거주지 특성	대도시	응답	254	48	29	16	317
		%	50.7	41.9	28.7	64.0	47.3
	중소도시	응답	163	15	54	6	238
		%	32.5	34.9	53.5	24.0	35.5
	농·어·산촌	응답	84	10	18	3	115
		%	16.8	23.3	17.8	12.0	17.2
전체		응답	501	43	101	25	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부분의 장애우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농어촌거주자는 응답자 평균으로 볼 때 17.2%에 그치나 특히 청각 및 언어장애가 23.3%정도가 농·어·산촌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우들에 비하여 도시에서 떨어져 읍·면단위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 정신지체는 12.0%만이, 그리고 지체장애는 16.8%, 시각장애는 17.8%만이 농·어·산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⑤ 장애등급 분포

〈표4-5〉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분포

항 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장애등급	1급	응답	143	2	75	2	222
		%	28.6	4.8	78.9	8.3	33.6
	2급	응답	132	25	4	11	172
		%	26.4	59.5	4.2	45.8	26.0
	3급	응답	118	6	3	10	137
		%	23.6	14.3	3.2	41.7	20.7
	4급	응답	71	4	3	0	78
		%	14.2	9.5	3.2	0.0	11.8
	5급	응답	26	1	5	1	33
		%	5.2	2.4	5.3	4.2	5.0
	6급	응답	10	4	5	0	19
		%	2.0	9.5	5.3	0.0	2.9
전 체	응답	500	42	95	24	661	
	%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장애우의 장애등급을 보면 대부분 중증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의 59.6%가 1, 2급에 해당하는 가운데, 특히 시각장애는 83.1%가 1, 2급장애이며 청각 및 언어장애 64.3%, 지체장애 55.0%, 정신지체 54.1%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우와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장애가 상대적으로 중증인 것에 유념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⑥ 결혼상태별 분포

〈표4-6〉 장애유형별 결혼상태 분포

항 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결혼상태	미혼	응답	148	10	14	14	186
		%	29.5	23.3	13.9	60.9	27.8
	가혼	응답	268	23	64	4	359
		%	53.4	53.5	63.4	17.4	53.7
	이혼	응답	43	3	8	1	55
		%	8.6	7.0	7.9	4.3	8.2
	사별	응답	26	7	12	2	47
		%	5.2	16.3	11.9	8.7	7.0
	별거	응답	17	0	3	2	22
		%	3.4	0.0	3.0	8.7	3.3
	전 체	응답	502	43	101	23	669
		%	100.0	100.0	100.0	100.0	100.0

결혼상태에서는 정신지체가 미혼이 많다. 응답자의 60.9%가 미혼인 정신지체에 비하면 지체장애 29.5%, 청각 및 언어장애 23.3%, 그리고 시각장애 13.0%는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사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평균 7.0%이나 청각 및 언어장애는 16.3%, 시각장애 11.9%, 정신지체 8.7%, 지체장애 5.2% 등이 사별한 상태이어서 장애우의 배우자 사별에 따른 독신생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⑦ 가구규모별 분포

〈표4-7〉 장애유형별 가구규모 분포

항 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가구원수	1인	응답	58	5	13	3	79
		%	11.6	12.2	13.1	13.0	12.0
	2-3인	응답	221	18	47	13	299
		%	44.4	43.9	47.5	56.5	45.2
	4-6인	응답	203	16	32	7	258
		%	40.8	39.0	32.3	30.4	39.0
	7인이상	응답	16	2	7	0	25
		%	3.2	4.9	7.1	0.0	3.8
	전 체	응답	498	41	99	23	661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유형별로 볼 때 어느 유형이 가장 많은 가구원을 구성하고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보면 응답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인 데 비하여 시각장애가 4.1명으로 평균보다도 0.6명이 더 많은 상태이고 지체가 3.4명, 청각 및 언어가 3.2명, 그리고 정신지체가 2.9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볼 때 정신지체가 미혼이므로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각장애는 기혼이 많은 상태여서 가구원수가 월등 많아 실직장애우의 가계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⑧ 가구주별 분포

〈표4-8〉 장애유형별 가구주여부

항 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가구주 여부	가구주	응답	331	25	77	14	447
		%	66.6	58.1	76.2	56.0	67.1
	가구원	응답	166	18	24	11	219
		%	33.4	41.9	23.8	44.0	32.9
전 체	응답	497	43	101	25	666	
	%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여부의 측면을 볼 때 시각장애우가 가구주인 경우가 전체 시각장애 응답자의 76.2%로서 가장 높은 가구주 비율을 보인다. 반면에 지체장애우가 66.6%,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58.1%, 정신지체가 56.0%를 각기 나타내고 있다.

⑨ 가구원 중 장애우수 분포

〈표4-9〉 장애유형별 가구원중 장애우수 분포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장애가족수 (본인 포함)	1인	응답	271	23	56	14	364
		%	54.4	53.5	57.7	58.3	55.0
	2인	응답	159	12	25	5	201
		%	31.9	27.9	25.8	20.8	30.4
	3인	응답	61	7	13	4	85
		%	12.2	16.3	13.4	16.7	12.8
	4인	응답	7	1	2	0	10
		%	1.4	2.3	2.1	0.0	1.5
	5인 이상	응답	0	0	1	1	2
		%	0.0	0.0	1.0	4.2	0.3
전 체	응답	498	43	97	24	662	
	%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원 중 응답자 외에 또 다른 장애우가 있는 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5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본인만이 가구원 중 장애우라고 말하였으며 이때 장애우 유형별로 그 비중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보여지지 않는다.

⑩ 주택소유형태별 분포

〈표4-10〉 장애유형별 주택소유형태 분포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주택소유 형태	자가	응답	91	12	29	4	136
		%	18.2	27.9	29.0	16.0	20.4
	전세	응답	86	6	14	2	108
		%	17.2	14.0	14.0	8.0	16.2
	월세	응답	85	5	13	7	110
		%	17.0	11.6	13.0	28.0	16.5
	영구임대	응답	188	13	34	10	254
		%	37.6	30.2	34.0	40.0	36.7
	기타(전혀적립, 무상임대 등)	응답	50	7	10	2	69
		%	10.0	16.3	10.0	8.0	10.3
전 체	응답	500	43	100	25	668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유형별로 '주택소유형태가 다른 유형을 보이는가' 라는 점에서 볼 때, 우선 자가의 비율이 모두 적다는 사실과 영구임대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장애유형별로 현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자가주택인 경우 각기 27.9%와 29.0%로서 평균 비중인 20.4%보다 높고 반면에 지체 18.2%, 정신지체 16.0%로서 이들의 자가주택율은 낮다. 영구임대주택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30-40%내외로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에 대한 임대아파트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⑪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표4-11〉 장애유형별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보호대상 자 여부	예	응답	296	21	64	10	391
		%	59.0	48.8	63.4	41.7	58.4
	아니오	응답	206	22	37	14	279
		%	41.0	51.2	36.6	58.3	41.6
전 체	응답	502	43	101	24	640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저소득장애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들은 58.4%인데 이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 63.4%, 지체 59.0%, 청각 및 언어 48.8%, 그리고 정신지체 41.7%의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시각 장애와 지체장애에서와 같이 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정신지체 영역에서도 생활보호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2) 실직자의 실직전 취직 상태

① 실직전임금근로자 여부

〈표4-12〉 장애유형별 실직전 임금근로자 여부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전 임금근로자 여부	예	응답	240	16	36	5	297
		%	74.8	61.5	72.0	62.5	73.3
	아니오	응답	81	10	14	3	108
		%	25.2	38.5	28.0	37.5	26.7
전 체	응답	321	26	50	8	405	
	%	100.0	100.0	100.0	100.0	100.0	

만성적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우를 제외하고 비교적 취업경험이 최근에 있었던 실직자 중심으로 실직전의 근로형태가 무엇이었던지를 보기 위하여 실직전 임금근로자였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지체장애우의 경우가 응답한 321명 중 74.8%인 240명, 시각장애우가 72.0%, 정신지체 장애우가 62.5%,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61.5%로 각기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유형별로 볼 때 일단 취업한 경우 임금근로자로 있었던 경험은 지체장애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시각장애우, 정신지체장애우,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순이다.

② 실직전 임금근로자종사형태

〈표4-13〉 장애유형별 실직전 임금근로자 종사형태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임금근로자 종사 형태	정규직	응답	122	6	16	2	146
		%	51.7	37.5	43.2	40.0	49.7
	임시직	응답	46	3	7	1	57
		%	19.5	18.8	18.9	20.0	19.4
	일용직	응답	68	7	14	2	91
		%	28.8	43.8	37.8	40.0	31.0
전체	응답	236	16	37	5	294	
	%	100.0	100.0	100.0	100.0	100.0	

또한 실직전 임금근로자로서의 종사형태가 정규직이었던 지, 임시직이었던 지, 아니면 일용직이었던 지를 볼 때 지체장애우인 경우가 정규직이 51.7%로서 정규직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시각장애우로서 43.2%, 정신지체 40.0%, 청각 및 언어 37.5% 순이었다. 따라서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하여서도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우, 시각장애우, 정신지체장애우,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순으로 그 안정성이 엇보인다.

③ 실직전비임금근로자종사형태

〈표4-14〉 장애유형별 실직전 비임금근로자 종사형태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비임금근로자 종사 형태	자영업자/ 고용주	응답	41	2	2		45
		%	56.2	33.3	18.2		48.9
	무급가족 종사자	응답	10	2	1	2	15
		%	13.7	33.3	9.1	100.0	16.3
	기타	응답	22	2	8		32
		%	30.1	33.3	72.7		34.8
전체	응답	73	6	11	2	92	
	%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실직전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그의 종사형태는 무엇이었던지를 설문한 결과 자영업자 혹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기타 등 3가지 선택군을 놓고 볼 때 지체장애우는 자영업자 혹은 고용주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56.2%,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3가지 경우에 고르게 퍼져있어 33.3%로 나타나고,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자영업 혹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보다도 기타의 경우가 72.7%로 절대적인 비중을 나타내며,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단 2명만이 응답하였지만 그들이 모두 무급가족종사자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유형별로 볼 때 비임금근로자의 종사형태는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④ 실직전직종

〈표4-15〉 장애유형별 실직전 직종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전 직종	전문가, 기술자	응답	41	3	6	0	50
		%	12.8	10.7	12.0	0.0	12.3
	사무직	응답	23	2	2	0	27
		%	7.2	7.1	4.0	0.0	6.7
	서비스판매직	응답	46	1	13	0	60
		%	14.4	3.6	26.0	0.0	14.8
	농업, 어업	응답	10	1	4	0	15
		%	3.1	3.6	8.0	0.0	3.7
	기능직, 기계 조립	응답	78	10	9	0	97
		%	24.4	35.7	18.0	0.0	23.9
	단순직	응답	89	9	10	7	115
		%	27.8	32.1	20.0	87.5	28.3
	노점, 직판	응답	12	0	2	1	15
		%	3.8	0.0	4.0	12.5	3.7
	관리행정직	응답	5	0	1	0	6
		%	1.6	0.0	2.0	0.0	1.5
	기타	응답	16	2	3	0	21
		%	5.0	7.1	6.0	0.0	5.2
전체	응답	320	28	50	8	406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전 직종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분포되었던 직종은 단순직이었고 지체장애우의 경우는 응답자의 27.8%,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32.1%, 시각장애우는 20.0%,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는 87.5%를 각기 나타낸다. 또한 응답이 많았던 직종으로 기능직 및 기계조립직이 있고 이는 각기 지체장애 24.4%, 청각 및 언어장애 35.7%, 시각장애 18.0% 등의 응답결과를 보여줬다.

이밖에 전문기술직과 사무직, 관리행정직 등에는 지체장애우의 21.6%,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17.8%, 시각장애우의 18.0%등이 해당하였고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⑤ 실직전업종

〈표4-16〉 장애유형별 실직전 업종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전업종	서비스업	응답	170	6	32	2	210
		%	52.9	22.2	68.1	25.0	51.9
	제조업	응답	136	19	12	5	172
		%	42.2	70.4	25.5	62.5	42.6
	농림어업	응답	16	2	3	1	22
		%	5.0	7.4	6.4	12.5	5.4
전체	응답	322	27	47	8	404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전 업종으로서 장애유형별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상반된 채로 나타난다.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의 경우는 서비스업에 대한 종사경험이 많아 각기 52.9%, 68.1% 등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각 및 언어장애는 제조업분야에 70.4%, 정신지체의 경우도 제조업에 62.5%가 취업되었다. 물론 이때 서비스업이란 노점상이나 좌판 등 매우 비공식적인 부문의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실제 지체장애의 경우 응답자 322명 중 노점 및 좌판을 한다고 답한자도 1.6%인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실직전사업장규모

〈표4-17〉 장애유형별 실직전 사업장 규모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전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응답	114	11	23	1	149
		%	36.9	39.3	46.0	12.5	37.7
	5-9인	응답	57	6	4	1	68
		%	18.4	21.4	8.0	12.5	17.2
	10-29인	응답	60	4	13	3	80
		%	19.4	14.3	26.0	37.5	20.3
	30-99인	응답	39	5	6	2	80
		%	12.6	17.9	12.0	25.0	13.2
	100-299인	응답	20	0	2	0	22
		%	6.5	0.0	4.0	0.0	5.6
	300인 이상	응답	19	2	2	1	24
		%	6.1	7.1	4.0	12.5	6.1
전체	응답	309	28	50	8	395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전 종사한 사업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설문한 결과 5인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 평균 37.7%가 종사하였는데 지체장애우는 응답자의 36.9%,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39.3%, 시각장애우는 46.0%, 정신지체장애우는 12.5%에 이른다. 따라서 시각장애우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정신지체장애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300인 이상의 대규모사업장에 종사한 경우 정신지체 12.5%, 청각 및 언어장애 7.1%, 지체장애 6.1%, 시각장애 4.0%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고, 이를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각기 38.0%, 25.0%, 25.2%, 그리고 20.0%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⑦ 실직전 평균수입

〈표4-18〉 장애유형별 실직전 평균 수입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평균수입 (급간)	30만원 미만	응답	32	1	8	1	42
		%	10.6	3.6	18.2	14.3	11.0
	30-50만원 미만	응답	57	9	11	1	78
		%	18.9	32.1	25.0	14.3	20.5
	50-100만원 미만	응답	133	14	18	4	169
		%	44.0	50.0	40.9	57.1	44.4
	100-150만원 미만	응답	52	2	5	0	59
		%	17.2	7.1	11.4	0.0	15.5
	150-200만원 미만	응답	17	1	2	1	21
		%	5.6	3.6	4.5	14.3	5.5
	200-250만원 미만	응답	3	1	0	0	4
		%	1.0	3.6	0.0	0.0	1.0
	250만원 이상	응답	8	0	0	0	8
		%	2.6	0.0	0.0	0.0	2.1
	전체	응답	302	28	44	7	381
		%	100.0	100.0	100.0	100.0	100.0

각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의 평균수입이 가장 많아서 74.7만원이 월평균임금이고 이어 정신지체 70만원, 청각 및 언어장애 69.6만원, 그리고 시각장애 58.5만원 등이었다. 따라서 지체장애와 정신지체보다는 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시각장애가 상대적으로 저임금상태에서 취업했음을 말해 준다.

〈표4-18-1〉 장애유형별 실직전 평균 수입

장애유형	지체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전체
수입수준(만원/월)	74.7	69.6	58.5	70.0	72.3

한편 평균수입의 분포를 보았을 때 30만원 미만자도 전체의 11.0%에 해당되고 시각장애우는 응답자의 18.2%에 해당되었다. 반면 150만원 이상이었던 장애우도 정신지체 중 14.3%, 지체장애우 중 9.2%,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7.2%, 그리고 시각장애우의 4.5%로 나타났다.

㉔ 취업기간

〈표4-19〉 장애유형별 취업기간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취업기간	1년 미만	응답	26	4	5	2	37
		%	8.6	16.7	10.6	28.6	9.8
	1-5년 미만	응답	131	8	17	4	160
		%	43.5	33.3	36.2	57.1	42.2
	5-10년 미만	응답	59	2	6	1	68
		%	19.6	8.3	12.8	14.3	17.9
	10-15년 미만	응답	34	5	10	0	49
		%	11.3	20.8	21.3	0.0	12.9
	15-20년 미만	응답	17	1	3	0	21
		%	5.6	4.2	6.4	0.0	5.5
	20년 이상	응답	34	4	6	0	44
		%	11.3	16.7	12.8	0.0	11.6
	전 체	응답	301	24	47	7	379
		%	100.0	100.0	100.0	100.0	100.0

각 장애유형별로 취업기간의 차이가 나는 지를 보기 위하여 설문한 결과, 우선 실적 지체장애우는 84개월, 청각 및 언어장애우 98개월, 시각장애우 100개월, 그리고 정신지체 31개월 등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우의 취업기간이 가장 긴 반면 정신지체는 가장 짧은 기간을 나타냈다.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 취업자 비중을 보면, 지체장애우의 경우 28.2%, 청각 및 언어장애우 41.7%, 시각장애우 40.5% 등이고 정신지체는 해당되는 자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직업의 안정성이나 임금측면에서는 지체장애우가 좀더 나은 조건이었지만, 장기간 취업한 것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우나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더 돋보였다.

㉕ 퇴직금수령여부

〈표4-20〉 장애유형별 퇴직금 수령여부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퇴직금 수령 여부	받은	응답	75	4	12	2	93
		%	23.9	14.3	26.1	25.0	23.5
	못받은	응답	18	2	0	0	20
		%	5.7	7.1	0.0	0.0	5.1
	없음	응답	104	16	12	2	134
		%	33.1	57.1	26.1	25.0	33.8
	해당사항 없음	응답	117	6	22	4	149
		%	37.3	21.4	47.8	50.0	37.6
전 체	응답	314	28	46	8	396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적과 함께 퇴직금을 수령하였는 지와 관련하여 설문한 결과 20%내외가 수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시각장애우의 26.1%, 정신지체의 25.0%, 지체장애우의 23.9%,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14.3%가 각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퇴직금이 아예 없는 직종에 종사한 경우가 더 많아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57.1%, 지체장애우의 33.1%, 시각장애우의 26.1%, 정신지체 25.0%가 되었다.

㉖ 실직이유

〈표4-21〉 장애유형별 실직이유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이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응답	57	5	5	1	68
		%	18.0	17.9	10.4	14.3	17.0
	해고, 권고 사직, 명퇴	응답	43	8	4	2	57
		%	13.6	28.6	8.3	28.6	14.3
	건강, 고령으로	응답	98	3	22	1	124
		%	31.0	10.7	45.8	14.3	31.1
	일거리 없음	응답	65	8	8	3	84
		%	20.6	28.6	16.7	42.9	21.1
	근무환경이 나빠서	응답	12	1	2	0	15
		%	3.8	3.6	4.2	0.0	3.8
	기타(주로 교통사고 등)	응답	41	3	7	0	51
		%	13.0	10.7	14.6	0.0	12.8
	전 체	응답	316	28	48	7	399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장애유형별로 보면, 우선 지체장애우는 건강과 고령이 가장 큰 이유로 31.0%, 다음 일거리가 없어서 20.6%, 직장의 파산·폐업·휴업 등의 이유가 18.0%, 해고·권고사직 등이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우의 경우도 건강고령이 가장 많고 일거리가 없어서, 기타 다른 장애요인 발생이 주된 이유가 된다. 반면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해고 및 권고사직 등의 이유와 일거리 없음이 28.6%로 가장 주된 이유가 되며, 여기에 직장의 파산·폐업·휴업 등이 이유가 된다. 또한 정신지체의 경우 일거리가 없어서가 42.9%나 되어 가장 주된 실적사유가 되는 등 장애유형에 따라 주된 이유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반드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⑩ 권고사직자 중 장애로 인한 실적 여부

〈표4-22〉 장애유형별 장애로 인한 실적여부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권고사직자 중 장애로 실적	예	응답	16	4	2	1	23
		%	40.0	50.0	50.0	50.0	42.6
	아니오	응답	11	2	2	0	15
		%	27.5	25.0	50.0	0.0	27.8
잘모르겠다	응답	13	2	0	1	16	
	%	32.5	25.0	0.0	50.0	29.6	
전체	응답	40	8	4	2	54	
	%	100.0	100.0	100.0	100.0	100.0	

권고사직된 장애우중에 장애로 인해 실적되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장애가 주된 실적사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결과적으로 전체 권고사직자의 42.6%, 장애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지체가 40.0%, 청각언어가 50.0%, 시각이 50.0%, 정신지체가 50.0%로 각기 나타났다.

따라서 명백히 '그렇지 않다'의 27.8%보다도 월등히 높은 응답치를 보여 장애로 인한 실적이 빈번히 행해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실적후 상태

1) 실적후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

① 실적후건강변화

〈표4-23〉 장애유형별 실적후 건강변화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적후 건강변화	매우 그렇다	응답	104	4	17	2	127
		%	34.7	16.0	37.0	33.3	33.7
	그런 편이다	응답	75	6	12	0	93
		%	25.0	24.0	26.1	0.0	24.7
	보통	응답	82	11	9	3	105
		%	27.3	44.0	19.6	50.0	27.9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25	3	6	1	35	
	%	8.3	12.0	13.0	16.7	9.3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14	1	2	0	4.5	
	%	4.7	4.0	4.3	0.0	4.5	
전체	응답	300	25	46	6	377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적후 건강상의 변화를 겪은 장애우는 전체적으로 58.4%이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우가 63.1%로서 건강의 변화를 느낀 정도가 가장 심하다. 이어서 지체장애우가 59.7%,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40.1%, 정신지체 33.3%로 나타난다.

② 실적후장애정도변화

〈표4-24〉 장애유형별 실적후 장애정도 변화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적후 장애정도 변화	매우 그렇다	응답	68	0	21	2	91
		%	23.6	0.0	42.9	33.3	24.9
	그런 편이다	응답	70	4	10	0	84
		%	24.3	17.4	20.4	0.0	23.0
	보통이다	응답	66	8	8	1	83
		%	22.9	34.8	16.3	16.7	22.7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56	9	6	3	74	
	%	19.4	39.1	12.2	50.0	20.2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28	2	4	0	34	
	%	9.7	8.7	8.2	0.0	9.3	
전체	응답	288	23	49	6	366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적후 장애정도가 더 심하다든지의 변화가 느껴졌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평균적으로는 47.9%가 그 변화를 느낀 것으로 응답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우가 63.3%로 그 심각성을 가장 강하게 호소하였으며, 지체장애우가 47.9%, 정신지체 33.3%, 청각 및 언어장애우 17.4%로 나타났다.

③ 실직후심리적스트레스정도

〈표4-25〉 장애유형별 실직후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후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157	15	23	3	198
		%	51.6	57.7	50.0	50.0	51.8
	그런 편이다	응답	106	7	14	3	130
		%	34.9	26.9	30.4	50.0	34.0
	보통이다	응답	30	4	6	0	40
		%	9.9	15.4	13.0	0.0	10.5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5	0	2	0	7	
	%	1.6	0.0	4.3	0.0	1.8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6	0	1	0	7	
	%	2.0	0.0	2.2	0.0	1.8	
전체	응답	304	26	46	6	382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체의 경우 86.5%, 청각 및 언어장애의 경우 84.6%, 시각의 경우 80.4%, 정신지체의 경우 100%로 나타난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별로 느끼지 않거나 전혀 느끼지 않는 자는 지체장애의 3.6%, 시각장애의 6.5%에 불과할 뿐이다.

④ 실직후생계유지어려움정도

〈표4-26〉 장애유형별 실직후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후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211	16	35	5	267
		%	67.0	59.3	71.4	83.3	67.3
	그런 편이다	응답	83	8	13	1	105
		%	26.3	29.6	26.5	16.7	26.4
	보통이다	응답	19	2	1	0	22
		%	6.0	7.4	2.0	0.0	5.5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1	1	0	0	2	
	%	.3	3.7	0.0	0.0	0.5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1	0	0	0	1	
	%	.3	0.0	0.0	0.0	0.3	
전체	응답	315	27	49	6	397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후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우의 경우는 거의 절대다수이다. 평균적으로도 93.7%에 달하며, 장애유형별로 볼 때도 정신지체는 100%, 시각장애우 97.9%, 지체장애 93.3%.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 89.9%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서의 고통은 장애인들에게 매우 큰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

⑤ 실직후부채증가정도

〈표4-27〉 장애유형별 실직후 부채증가 정도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후 부채증가 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90	3	6	2	101
		%	31.8	12.5	13.6	33.3	28.3
	그런 편이다	응답	81	5	14	2	102
		%	28.6	20.8	31.8	33.3	28.6
	보통이다	응답	54	7	10	1	72
		%	19.1	29.2	22.7	16.7	20.2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47	8	7	1	63	
	%	16.6	33.3	15.9	16.7	17.6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11	1	7	0	19	
	%	3.9	4.2	15.9	0.0	5.3	
전체	응답	283	24	44	6	357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후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실직 장애우는 평균적으로 56.9%이며, 이중 정신지체장애우가 66.7%, 지체장애우가 60.4%, 시각장애가 45.4%, 그리고 역시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33.3%로 가장 적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⑥ 부부·가족관계악화정도

〈표4-28〉 장애유형별 부부·가족관계 악화 정도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부부·가족관계 악화 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55	3	4	3	65
		%	20.8	14.3	9.5	50.0	19.5
	그런 편이다	응답	65	7	11	0	83
		%	24.6	33.3	26.2	0.0	24.9
	보통이다	응답	72	4	11	2	89
		%	27.3	19.0	26.2	33.3	26.7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51	5	10	1	67	
	%	19.3	23.8	23.8	16.7	20.1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21	2	6	0	29	
	%	8.0	9.5	14.3	0.0	8.7	
전체	응답	264	21	42	6	333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업으로 인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는 지체장애의 경우 45.4%, 청각 및 언어 장애는 47.6%, 시각장애는 35.7%, 그리고 정신지체는 50.0%로 각기 응답되었다. 따라서 이들 가정내에서의 관계 악화가 장애인의 심리적 상태를 흐트러뜨리며 이로부터 스트레스와 장애정도의 심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⑦ 자녀교육비 감소정도

〈표4-29〉 장애유형별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자녀교육비 감소 정도	매우 그렇다	응답	88	5	15	2	10
		%	35.8	22.7	38.5	40.0	35.3
	그런 편이다	응답	74	6	9	2	91
		%	30.1	27.3	23.1	40.0	29.2
	보통 이다	응답	37	3	6	1	47
		%	15.0	13.6	15.4	20.0	15.1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32	7	2	0	41
		%	13.0	31.8	5.1	0.0	13.1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15	1	7	0	23
		%	6.1	4.5	17.9	0.0	7.4
전체	응답	246	22	39	5	312	
	%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교육비의 감소를 호소하는 실직장애우는 지체장애우의 경우 65.9%, 청각 및 언어장애우 50.0%, 시각장애 61.6%, 정신지체 80% 등으로 나타났다. 실직에 따른 생활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⑧ 실직후아픈가족유무

〈표4-30〉 장애유형별 실직후 아픈 가족 유무

항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직후 아픈 가족 유무	예	응답	141	9	21	3	174
		%	46.1	34.6	46.7	50.0	45.4
	아니오	응답	165	17	24	3	209
		%	53.9	65.4	5.3	50.0	54.6
전체	응답	306	26	45	6	383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후 아픈 가족이 있는 경우도 실직가정의 불안정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의료비용 등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더욱 압박하는 사유로 작용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대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5.4%, 그러나 정신지체는 50.0%, 시각장애 46.7%, 지체장애 46.1%,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 34.6%로 나타났다.

⑨ 실직이 건강,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들의 종합적 평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실직은 전체 실직장애우에게 많은 심리적, 가정적 그리고 생활 자체에서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아래 표와 같이 각 응답치를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보면 그 수치가 적을 수록 각 항목에서 말하는 영향력의 정도가 크음을 보게 해 준다.

지체장애우는 실직후 건강의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며, 가족들의 의료적인 문제가 또한 다른 장애우에 비하여 걱정거리임을 보여준다.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실직후 스트레스를 느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타 장애우에 비하여 두드러진 문제거리이며, 시각장애우는 실직후 건강의 악화, 장애정도의 변화 등이, 그리고 정신지체의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측면, 부채증가의 정도, 가족관계의 악화 측면, 자녀교육비 감소의 측면 및 실직후 아픈 가족이 발생하는 측면 등에서 걱정의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실직후 생계의 어려움이 강화된다는 점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거리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4-31〉 장애유형별로 실직이 가족관계, 장애정도, 건강등에 미친 영향

장애유형	실직후 건강변화	실직후 장애 정도 변화	실직후 심리적 스트레스	실직후 생계 유지 어려	실직후 부채 증가 정도	부부, 가족관계 악화정도	자녀교육비 감소정도	실직후 아픈 가족 유무
지체	2.2333	2.6736	1.6743	1.4063	2.3216	2.6894	2.2358	1.5392
청각·언어	2.6400	3.3913	1.5769	1.5556	2.9583	2.8095	2.6818	1.6538
시각	2.2174	2.2245	1.7826	1.3061	2.8864	3.0714	2.4103	1.5333
정신지체	2.5000	2.8333	1.5000	1.1667	2.1667	2.1667	1.8000	1.5000
전체	2.2626	2.6612	1.6480	1.4005	2.4314	2.7357	2.2821	1.5457
p값	0.363	0.004**	0.768	0.328	0.004**	0.183	0.307	0.718

주 : 1) 위의 평균값은 5분위 척도인 경우 '매우 그렇다' = 1, '그런 편이다' = 2, '보통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5로 계산하여 평균한 값이다. 따라서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질문에 대하여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2분위 척도인 경우는 '그렇다' = 1, '그렇지 않다' = 2로 계산하였다. 여기서는 '가족들 건강악화의 경우만 2분위 척도에 의한 질문이다.
2) **: 99%수준에서 유의적임.

2) 실업 하의 생활 실태

① 생계유지수단

〈표4-32〉 장애유형별 생계유지수단 현황

구분	항목	생계수단으로 기능		생계수단이 안됨		합계	
		명	%	명	%	명	%
		가. 본인의 근로소득	전체	111	16.5	563	83.5
가. 본인의 근로소득	지체	91	18.1	412	81.9	503	100.0
	청각·언어	12	27.9	31	72.1	43	100.0
	시각	5	5.0	96	95.0	101	100.0
	정신지체	3	12.0	22	88.0	25	100.0
	나.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전체	185	27.4	489	72.6	672
나.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지체	137	27.2	366	72.8	503	100.0
	청각·언어	9	20.9	34	79.1	43	100.0
	시각	32	31.7	69	68.3	101	100.0
	정신지체	7	28.0	18	72.0	25	100.0
	다.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전체	16	2.4	358	97.6	672
다.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지체	14	2.8	489	97.2	503	100.0
	청각·언어	0	0.0	43	100.0	43	100.0
	시각	2	2.0	99	98.0	101	100.0
	정신지체	0	0.0	43	100.0	43	100.0
	라. 저축	전체	83	12.3	591	87.7	672
라. 저축	지체	62	12.3	441	87.7	672	100.0
	청각·언어	9	20.9	34	79.1	43	100.0
	시각	11	10.9	90	89.1	101	100.0
	정신지체	1	4.0	24	96.0	25	100.0
	마. 천지의 지원	전체	136	20.2	538	79.8	672
마. 천지의 지원	지체	114	22.7	389	77.3	503	100.0
	청각·언어	7	16.3	36	83.7	43	100.0
	시각	12	11.9	89	88.1	101	100.0
	정신지체	3	12.0	22	88.0	25	100.0
	바. 종교 및 사회기관 도움	전체	110	16.3	584	83.7	672
바. 종교 및 사회기관 도움	지체	75	14.9	428	85.1	503	100.0
	청각·언어	6	14.0	37	86.0	43	100.0
	시각	23	22.8	78	77.2	101	100.0
	정신지체	6	24.0	19	76.0	25	100.0
	사. 이자 등 재산소득	전체	13	1.9	661	98.1	672
사. 이자 등 재산소득	지체	11	2.32.2	492	97.8	503	100.0
	청각·언어	1	2.3	42	97.7	43	100.0
	시각	1	1.0	100	99.0	101	100.0
	정신지체	0	0.0	25	100.0	25	100.0
	아. 실업급여	전체	29	4.3	645	95.7	672
아. 실업급여	지체	22	4.4	481	95.6	503	100.0
	청각·언어	2	4.7	41	95.3	43	100.0
	시각	3	3.0	98	97.0	101	100.0
	정신지체	2	8.0	23	92.0	25	100.0

구분	항목	생계수단으로 기능		생계수단이 안됨		합계	
		명	%	명	%	명	%
		자. 빛을 얻어	전체	109	16.2	565	83.8
자. 빛을 얻어	지체	90	17.9	413	82.1	503	100.0
	청각·언어	4	9.3	39	90.7	43	100.0
	시각	11	10.9	90	89.1	101	100.0
	정신지체	4	16.0	21	84.0	25	100.0
	차. 이웃의 도움	전체	73	10.8	601	89.2	672
차. 이웃의 도움	지체	59	11.7	444	88.3	503	100.0
	청각·언어	2	4.7	41	95.3	43	100.0
	시각	9	8.9	92	91.1	101	100.0
	정신지체	3	12.0	22	88.0	25	100.0
	카. 정부보조금	전체	352	52.2	322	47.8	672
카. 정부보조금	지체	269	53.5	234	46.5	503	100.0
	청각·언어	18	41.9	25	58.2	43	100.0
	시각	56	55.5	45	44.5	101	100.0
	정신지체	9	36.0	16	64.0	25	100.0
	타. 정부의 대부사업	전체	21	3.1	653	96.9	672
타. 정부의 대부사업	지체	19	3.8	484	96.2	503	100.0
	청각·언어	0	0.0	43	100.0	43	100.0
	시각	2	2.0	99	98.0	101	100.0
	정신지체	0	0.0	25	100.0	25	100.0
	파. 공공근로사업	전체	61	9.1	613	90.9	672
파. 공공근로사업	지체	48	9.5	455	90.5	503	100.0
	청각·언어	6	13.9	37	88.7	43	100.0
	시각	5	5.0	96	95.0	101	100.0
	정신지체	2	8.0	23	92.0	25	100.0
	하. 직업훈련수당	전체	11	1.6	663	98.4	672
하. 직업훈련수당	지체	9	1.8	494	98.2	503	100.0
	청각·언어	1	2.3	42	98.1	43	100.0
	시각	1	1.0	100	99.0	101	100.0
	정신지체	0	0.0	25	100.0	25	100.0

실직장애우에게 있어서 생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단은 '정부의 보조금', '타가구원의 소득 및 친지로부터의 지원' 등이었음은 익히 서술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장애유형별로 살펴봐도 변함없이 확인되는 추세이다. 다만, 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우보다도 '빛을 얻어' 생계를 해결하는 정도가 더 많았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저축에 대한 의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타 유형의 장애우보다도 높았다.

또한 시각장애우는 종교 및 사회기관의 도움이 크며, 타가구원과의 의존정도가 높았으며, 정신지체장애우도 종교 및 사회기관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②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표4-33〉 장애유형별 실직자의 현재 개인 총소득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현재개인 소득	없음	응답	132	16	29	10	187
		%	26.7	37.2	29.3	45.5	28.4
	10만원 미만	응답	85	7	17	3	112
		%	17.2	16.3	17.2	13.6	17
	10-30만원 미만	응답	164	16	37	6	223
		%	33.1	37.2	37.4	27.3	33.8
	30-50만원 미만	응답	73	2	15	1	91
		%	14.7	4.7	15.2	4.5	13.8
	50-70만원 미만	응답	28	1	1	2	32
		%	5.7	2.3	1.0	9.1	4.9
	70-90만원 미만	응답	9	1	0	0	10
		%	1.8	2.3	0.0	0.0	1.5
	90만원 이상	응답	4	0	0	0	4
		%	0.8	0.0	0.0	0.0	0.6
	전 체	응답	495	43	99	22	659
		%	100.0	100.0	100.0	100.0	100.0

특정한 정기적인 직업활동이 없는 현재 정부의 보조금이나 사회단체들의 원조 및 개인의 불특정 한 소득활동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규모를 물었을 때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체장애우의 경우 26.7%,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경우 37.2%, 시각장애우의 경우 29.3% 및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45.5%에 달하였다.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및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경우가 소득이 전혀 없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소득의 정도가 30만원이 안되는 경우로 확대해보면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응답자의 90.7%나 이에 속하고 있고 이어서 정신지체장애우 86.4%, 시각장애우 83.9%, 그리고 지체장애우 77.0%로 각기 나타난다.

③ 실업장애우의 가구 총소득

장애우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구 전체의 소득정도를 설문한 결과, 우선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정신지체장애우가 66.7%, 시각장애우가 64.8%로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를 50만원이하로 확대하면 시각장애우가 응답자의 92.3%정도가 해당하여 가구원 전체의 소득 확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정신지체장애우와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각기 85.7%, 지체장애우는 84.9%가 가구소득 50만원 미만에 해당하였다.

〈표4-34〉 장애유형별 실업장애우의 가구 총소득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현 총가구 소득	30만원 미만	응답	266	19	59	14	358
		%	58.2	45.2	64.8	66.7	58.6
	30-50만원 미만	응답	122	17	25	4	168
		%	26.7	40.5	27.5	19.0	27.5
	50-99만원 미만	응답	62	3	5	2	72
		%	13.6	7.1	5.5	9.5	11.8
	100-150만원 미만	응답	5	3	2	1	11
		%	1.1	7.1	2.2	4.8	1.8
	150-200만원 미만	응답	1	0	0	0	1
		%	0.2	0.0	0.0	0.0	0.2
200만원 이상	응답	1	0	0	0	1	
	%	0.2	0.0	0.0	0.0	0.2	
전 체	응답	457	42	91	21	611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표4-35〉 장애유형별 실업자의 가구소득 감소액 규모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소득감소 (급간)	30만원 미만	응답	78	4	22	4	108
		%	24.8	15.4	38.6	40.0	26.5
	30-50만원 미만	응답	60	6	10	2	78
		%	19.1	23.1	17.5	20.0	19.2
	50-100만원 미만	응답	112	8	19	2	141
		%	35.7	30.8	33.3	20.0	33.5
	100-150만원 미만	응답	42	6	5	2	55
		%	13.4	23.1	8.8	20.0	13.5
	150-200만원 미만	응답	10	0	1	0	11
		%	3.2	0.0	1.8	0.0	2.7
200만원 이상	응답	12	2	0	0	14	
	%	3.8	7.7	0.0	0.0	3.4	
전 체	응답	314	26	57	10	407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업장애우는 누구나 가구소득의 감소를 경험하는 데 그 감소의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각 및 시각장애우가 감소의 정도가 가장 커서 평균 73만7천원정도이고, 지체장애우 59만4천원, 정신지체 47만5천원, 그리고 시각장애우가 44만원정

도로 나타났다.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경우 50만~150만원정도의 큰 감소를 보인 응답자가 전체의 53.9%정도가 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150만원이상의 감소폭을 보인 경우도 6.1%나 되는 가운데, 지체장애우가 7.0%,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7.7%, 시각장애우 1.8% 등에 이른다.

⑤ 최저생계비 규모

〈표4-36〉 장애유형별 최저생계비 규모

항 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최저 생계비(급간)	30만원 미만	응답	28	8	4	0	40
		%	5.9	19.5	4.3	0.0	6.3
	30~50만원 미만	응답	91	7	34	6	138
		%	19.1	17.1	36.2	30.0	21.9
	50~100만원 미만	응답	283	20	51	9	363
		%	59.5	48.8	54.3	45.0	57.5
	100~150만원 미만	응답	59	4	4	4	71
		%	12.4	9.8	4.3	20.0	11.3
	150~200만원 미만	응답	13	0	0	0	13
		%	2.7	0.0	0.0	0.0	2.1
	200만원 이상	응답	2	2	1	1	6
		%	.4	4.9	1.1	5.0	1.0
전 체	응답	476	41	94	20	631	
	%	100.0	100.0	100.0	100.0	100.0	

좀더 정확한 가계사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장애우들이 응답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자신들의 실제 현 가구소득과 비교하여 보았다. 자신이 속한 가구의 실제소득이 자신이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정신지체장애우 설문대상자 전체의 95.0%, 시각장애우 88.4%, 지체장애우 75.7%,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 60.0%가 된다.

따라서 사실 절대다수의 장애우 및 그 가족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최저생계수준에 못미치는 가계수준에 놓여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실적상태의 장애우들에게 적절한 대응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4-37〉 장애유형과 총가구 특별 최저생계비 급간

유형별	소득 수준	현재의 총가구소득					전체	
		30만원 미만	30~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150만원미만	150~200만원미만		200만원 이상
지체 장애	최저 생계비(급간)	30만 미만	21	1	0	0	0	22
		30~50만 미만	73	8	3	0	0	84
		50~100만 미만	149	88	29	1	1	268
		100~150만 미만	11	21	20	3	0	56
		150~200만 미만	3	1	8	1	0	13
		200만 이상	1	1	0	0	0	2
	응답	258	120	60	50	1	1	445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수		237	111	28	1	0	0	377
청각 및 언어	최저 생계비(급간)	30만 미만	4	2	0	1	0	7
		30~50만 미만	2	4	0	1	0	7
		50~100만 미만	8	9	3	0	0	20
		100~150만 미만	2	1	0	1	0	4
		150~200만 미만	0	1	0	0	0	2
		200만 이상	1	0	0	0	0	40
	응답	17	17	3	3	0	0	40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수		13	11	0	0	0	0	24
시각	최저 생계비(급간)	30만 미만	2	0	0	0	0	2
		30~50만 미만	23	5	0	1	0	29
		50~100만 미만	30	17	3	0	0	50
		100~150만 미만	2	1	1	0	0	1
		150~200만 미만	0	0	0	0	0	1
		200만 이상	0	0	0	1	0	0
	응답	57	23	4	2	0	0	86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수		55	18	1	1	0	0	76
정신 지체	최저 생계비(급간)	30만 미만	0	0	0	0	0	0
		30~50만 미만	6	0	0	0	0	6
		50~100만 미만	6	2	1	0	0	9
		100~150만 미만	1	2	1	0	0	4
		150~200만 미만	0	0	0	0	0	0
		200만 이상	0	0	0	1	0	1
	응답	13	4	2	1	0	0	20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수		13	4	1	1	0	0	19

주 : 음영처리된 부분은 현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보여주는 것임.

3) 구직활동의 실태

① 구직활동 희망 여부

〈표4-38〉 장애유형별 구직활동 희망여부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일자리를 원하는가?	예	응답 372	35	53	13	473
	%	75.0	83.3	53.0	54.2	71.5
	아니오	응답 124	7	47	11	189
	%	25.0	16.7	47.0	45.8	28.5
전체	응답	496	42	100	24	662
	%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직 장애우 중 일자리를 원하는 자가 71.5%, 아예 구직을 포기한 자가 28.5%인 가운데 장애우 유형별로 구직에 대한 반응이 확연히 달랐다. 지체장애우 설문대상자의 75%,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83.3%가 일자리를 원하는 것에 비하면, 시각장애우는 53.0%만이, 역시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도 오직 54.2%만이 일자리를 원할 뿐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장애우들이 구직을 포기한 상태이다.

〈표 4-39〉 장애유형과 실업장애유형별 구직활동 희망여부

장애유형	항 목	장 애 유 형		전체
		원함	원하지않음	
지체장애	IMF형 실업자	79	8	87
	IMF 아전 실업자	189	45	234
	소 계	268	53	321
청각 및 언어장애	IMF형 실업자	15	1	16
	IMF 아전 실업자	11	1	12
	소 계	26	2	28
시각장애	IMF형 실업자	13	1	14
	IMF 아전 실업자	23	13	36
	소 계	36	14	50
정신지체장애	IMF형 실업자	3	2	5
	IMF 아전 실업자	3	1	4
	소 계	6	3	9
전체	IMF형 실업자	110	12	122
	IMF 아전 실업자	226	66	286
	전 체	336	72	408

주 : 음영처리된 부분은 실망 실업자를 나타냄.

이들을 실망실업자라고 부른다면, 특히나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실직하였으면서도 현재로선 명백히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 지가 중요할 것이다. 지체장애우의 경우 취업경험이 있는 자로서 더 이상 구직을 원치않는 자는 16.5%인 53명에 이르고, 청각 및 언어장애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7.1%에 그치고 있으며, 시각장애우 28.0%, 정신지체장애우 33.3% 등으로 나타난다.

② 구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표 4-40〉 구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본인이 실직해서	응답	107	16	12	4	139
		%	28.5	45.7	23.1	30.8	29.3
	배우자 또는 가족의 실직해서	응답	25	5	3	2	35
		%	6.7	14.3	5.8	15.4	7.4
	소비지출이 늘어나서	응답	125	9	18	4	156
		%	33.3	25.7	34.6	30.8	32.8
	빛때문에	응답	58	2	5	1	66
		%	15.5	5.7	9.6	7.7	13.9
	본인의 학비, 용돈 때문에	응답	26	1	7	1	35
		%	6.9	2.9	13.5	7.7	7.4
기타	응답	34	2	7	1	44	
	%	9.1	5.7	13.5	7.7	9.3	
전체	응답	375	35	52	13	475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우가 실직된 현재 시점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은 장애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소비지출이 늘어나서'가 가장 주된 원인이고 다음이 '본인의 실직으로'라고 응답되지만, 청각 및 언어장애와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본인의 실적이 당장의 구직에 대한 강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빛 때문에'가, 시각장애우의 경우 '본인의 학비 및 용돈 때문에'가,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가족의 실직으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구직 사유로 응답되고 있다.

③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표4-41〉 구직을 원치 않는 이유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	장애정도가 심해서	응답	107	16	12	4	139
		%	28.5	45.7	23.1	30.8	29.3
	취업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응답	25	5	3	2	35
		%	6.7	14.3	5.8	15.4	7.4
	건강이 악화되서	응답	125	9	18	4	156
		%	33.3	25.7	34.6	30.8	32.8
	기타	응답	58	2	5	1	66
%		15.5	5.7	9.6	7.7	13.9	
전체	응답	375	35	52	13	475	
	%	100.0	100.0	100.0	100.0	100.0	

반면 일자리를 원치 않는 이유로는 '장애정도가 심화되어서'가 일반적인 주된 이유이지만, 청각 및 언어장애는 일반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가 가장 주된 이유가 되고 있으며 또한 '취업가능성이 없어서'에는 정신지체장애우와 시각장애우가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문제로 지적한 경향이 었 보인다.

④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표4-42〉 구체적인 구직활동 유형

장애유형	항 목	이용한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명	%	명	%
가. 실직자모임터 방문	전체	127	18.8	545	81.2
	지체	108	21.5	395	79.5
	청각 및 언어	5	25.6	32	74.4
	시각	5	5.0	96	95.0
나. 친지나 친구와 접촉	전체	206	30.6	468	69.4
	지체	162	32.2	341	67.8
	청각 및 언어	16	37.2	27	62.8
	정신지체	21	20.8	80	79.2
다. 공공직업안정 기관접속	전체	215	31.9	459	68.1
	지체	181	36.0	322	64.0
	청각 및 언어	14	32.6	29	67.4
	정신지체	14	13.9	87	86.1
라. 민간직업안내소 접속	전체	75	11.1	599	88.9
	지체	62	12.3	441	87.7
	청각 및 언어	3	7.0	40	93.0
	정신지체	6	5.9	95	94.1
마. 사업체직접연락	전체	135	20.0	539	80.0
	지체	111	22.1	391	77.9
	청각 및 언어	9	20.9	34	79.1
	정신지체	9	8.9	92	91.1
바. 장애우단체 등 방문	전체	281	41.7	393	58.3
	지체	232	46.1	271	53.9
	청각 및 언어	16	37.2	27	62.8
	정신지체	28	27.7	83	72.3
사. 장애우체육 박람회 방문	전체	107	15.9	567	84.1
	지체	94	18.7	409	81.3
	청각 및 언어	5	11.6	38	88.4
	정신지체	5	5.0	96	95.0
아. 신문 등의 구인광고	전체	107	15.9	567	84.1
	지체	97	19.3	406	80.7
	청각 및 언어	4	9.3	39	91.7
	정신지체	3	3.0	96	97.0
	정신지체	3	12.0	22	88.0

일반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친구나 친지와의 접촉방법을 구사하는 것은 장애우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 약간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구직활동 방식에 있어서 지체장애우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반면에 시각장애우와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소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보더라도 지체장애우 응답자의 36.0%,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32.6%이지만, 시각장애우는 겨우 13.9%, 정신지체장애우는 24.0%만이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실직자모임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지체장애우의 21.5%,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25.6%가 이용한다고 답하였지만, 시각장애우는 5.0%, 정신지체장애우는 12.0%만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친구나 친지와의 접촉이라는 항목에 있어서도 지체장애우 32.2%, 청각 및 언어장애우 37.2%, 시각장애우 20.8% 및 정신지체 20.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우의 비적극성은 두드러져 민간직업안내소의 이용에서도 평균 11.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5.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아울러 사업체의 직접 방문에 있어서도 평균 20.1%에 비하여 시각장애우는 8.9%,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도 전체 15.9%, 시각장애우 5.0%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장애우가 취업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불리한 상태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⑤ 구직활동 시의 가장 어려운 점

〈표4-43〉 구직활동시의 가장 어려운점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구직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	적당한 일거리 부재	응답 151	14	14	3	182
	%	37.3	40.0	25.5	21.4	35.8
	취업정보의 부재	응답 19	2	2	0	23
	%	4.7	5.7	3.6	0.0	4.5
	학력, 기능 자격의 부적합	응답 48	6	4	1	59
	%	11.9	17.1	7.3	7.1	11.6
	장애	응답 163	11	27	9	210
	%	40.2	31.4	49.1	64.3	41.3
	적은 보수	응답 4	1	0	1	6
	%	1.0	2.9	0.0	7.1	1.2
	고령	응답 5	0	0	0	5
	%	1.2	0.0	0.0	0.0	1.0
성차별	응답 13	1	6	0	20	
%	3.2	2.9	10.9	0.0	3.9	
기타	응답 2	0	2	0	4	
%	0.5	0.0	3.6	0.0	0.8	
전체	응답 405	35	55	14	509	
%	100.0	100.0	100.0	100.0	100.0	

구직활동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장애를 꼽는다. 특히 정신지체나 시각장애의 경우는 각기 64.3%, 49.1%로 장애를 선택하였고 지체장애 역시 40.2%가 이를 꼽았다. 다만 청각 및 언어장애의 경우는 이 요인은 31.4%가 응답한 반면, 일거리가 없는 경우는 40.0%로 응답함으로써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가장 주된 문제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시각장애의 경우 성차별로 인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경우가 전체의 10.9%가 되어 주목된다.

⑥ 취업을 원하는 직종

〈표4-44〉 원하는 취업 직종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희망 직종	전문가, 기술자	응답 33	3	3	1	40
	%	6.6	7.0	3.0	4.0	6.0
	사무직	응답 42	3	3	1	49
	%	8.3	7.0	3.0	4.0	7.3
	서비스판매직	응답 69	1	14	0	84
	%	13.7	2.3	13.9	0.0	12.5
	농,어업	응답 2	1	0	0	3
	%	0.4	2.3	0.0	0.0	0.4
	기계조립, 기능직	응답 61	12	4	1	78
	%	12.1	27.9	4.0	4.0	11.6
	단순노무	응답 48	6	13	2	69
	%	9.5	14.0	12.9	8.0	10.3
	노점, 직판	응답 4	0	0	1	5
	%	0.8	0.0	0.0	4.0	0.7
	관리행정	응답 7	0	0	0	7
	%	1.4	0.0	0.0	0.0	1.0
	아무거나	응답 40	2	4	2	48
	%	8.0	4.7	4.0	8.0	7.1
	무응답	응답 197	15	60	17	289
	%	39.2	34.9	59.4	68.0	43.0
전체	응답 503	43	101	25	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우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직종은 서비스판매직, 기계조립 및 기능직, 그리고 단순노무직 등이다. 장애우형별로 볼 때 지체장애우의 경우는 이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판매직보다는 기계조립 및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을 선호하며,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기계조립 및 기능직은 거의 선호되지 않으며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단순노무직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일하겠다는 응답도 지체장애 및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⑦ 희망업종

〈표 4-45〉 희망업종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희망 직종	서비스업	응답	141	5	28	3	168
		%	28.0	11.6	27.7	12.0	25.0
	제조업	응답	102	18	6	1	127
		%	20.3	41.9	5.9	4.0	18.9
	농림어업	응답	3	1	0	0	4
		%	0.6	2.3	0.0	0.0	0.6
	아무거나	응답	59	4	7	4	74
		%	11.7	9.3	6.9	16.0	11.0
	무응답	응답	198	15	60	17	290
		%	39.4	37.9	59.4	68.0	43.2
	전체	응답	503	43	101	25	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희망업종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대부분이지만, 지체장애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다같이 선호되고 있으나, 청각 및 언어장애는 제조업을 월등히 선호한다. 또한 시각장애우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업을 월등 선호하고, 그런 반면 정신지체는 아무거나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⑧ 희망 종사형태

〈표 4-46〉 장애유형별 희망종사형태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희망 직종	정규직	응답	217	21	28	7	273
		%	43.1	48.8	27.7	28.0	40.6
	임시직	응답	4	1	1	0	6
		%	0.8	2.3	1.0	0.0	0.9
	일용직	응답	30	4	6	0	40
		%	6.0	9.3	5.9	0.0	6.0
	자영업자	응답	33	2	4	1	40
		%	6.6	4.7	4.0	4.0	6.0
	무급가족 종사자	응답	1	0	0	0	1
		%	0.2	0.0	0.0	0.0	0.1
	아무거나	응답	22	0	2	0	24
		%	4.4	0.0	2.0	0.0	3.6
	무응답	응답	196	15	60	17	288
		%	39.0	34.9	59.4	68.0	42.9
전체	응답	503	43	101	25	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희망하는 종사형태는 정규직이 훨씬 많이 응답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지체장애와 청각 및 언어장애는 적극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희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시각 및 정신지체는 상대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무력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무기력한 구직에 대한 인식, 자포자기적인 취업 전망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⑨ 희망 보수 수준

〈표 4-47〉 장애유형별 희망보수수준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희망 소득	30만원 미만	응답	2	0	2	0	4
		%	0.6	0.0	4.3	0.0	0.9
	30~50만원 미만	응답	23	1	5	0	29
		%	6.4	3.1	10.9	0.0	6.5
	50~100만원	응답	256	21	28	11	316
		%	71.3	65.6	60.9	91.7	70.4
	100~150만원 미만	응답	67	8	11	1	87
		%	18.7	25.0	23.9	8.3	19.4
	150~200만원 미만	응답	7	0	0	0	7
		%	1.9	0.0	0.0	0.0	1.6
	200만원 이상	응답	4	2	0	0	6
		%	1.1	6.3	0.0	0.0	1.3
	전체	응답	503	43	101	25	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우의 대부분인 70.4%가 50만-100만원의 소득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는 응답자의 91.7%가 이에 집중되어있고 지체장애우의 71.3%,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65.6%, 시각장애우의 60.9%가 이 정도의 소득을 원한다. 또한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25.0%, 시각장애우의 23.9%, 그리고 지체장애우의 18.7% 등이 100만-150만원의 소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반응 및 효과

1) 생활보호사업

①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표 4-48〉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보호 사업 인지도 여부	안다	응답	369	27	62	14	462
		%	72.7	62.8	62.0	56.0	69.8
	모른다	응답	135	16	38	11	200
		%	27.3	37.2	38.0	44.0	30.2
전체	응답	494	43	100	25	66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생활보호사업 신청여부

〈표 4-49〉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보호 사업 신청 여부	신청	응답	286	18	49	11	364
		%	70.3	58.1	73.1	78.6	70.1
	미신청	응답	121	13	18	3	155
		%	29.7	41.9	26.9	21.4	29.9
전체	응답	407	31	67	14	519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신청 생활보호사업의 종류

〈표 4-50〉 장애유형별 신청 생활보호사업의 종류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어느 생활 보호사업 을 신청했 나	일반생활 보호사업	응답 202	13	32	7	254
	%	70.9	72.2	69.6	63.6	70.6
한시적생활 보호사업	응답	83	5	14	4	106
	%	29.1	27.8	30.4	36.4	29.4
전체	응답	285	18	46	11	360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생활보호사업 수혜여부

〈표 4-51〉 장애유형별 생활보호사업 수혜 여부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보호 사업 수혜 여부	수혜	응답 224	13	35	8	280
	%	77.0	76.5	72.9	72.7	76.3
미수혜	응답	67	4	13	3	87
	%	23.0	23.5	27.1	27.3	23.7
전체	응답	291	17	48	11	367
	%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지원액

〈표 4-52〉 장애유형별 지원액수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지원액 (급간)	5만원 미만	응답 9	2	1	0	12
	%	4.2	15.4	3.3	0.0	4.5
	10만원 미만	응답 28	3	5	1	37
	%	13.0	23.1	16.7	12.5	13.9
	20만원 미만	응답 71	4	7	5	87
	%	32.9	30.8	23.3	62.5	32.6
	30만원 미만	응답 75	1	9	0	85
	%	34.7	7.7	30.0	0.0	31.8
	40만원 미만	응답 20	2	5	2	29
	%	9.3	15.4	16.7	25.0	10.9
	40만원 이상	응답 13	1	3	0	17
	%	6.0	7.7	10.0	0.0	6.4
전체	응답	216	13	30	8	267
	%	100.0	100.0	100.0	100.0	100.0

⑥ 생활보호사업 미수혜이유

〈표 4-53〉 장애유형별 생활보호 미수혜 이유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 보호 사업 비수혜 이유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응답 50	4	3	1	58
	%	26.9	25.0	13.6	25.0	25.4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	응답 41	4	4	2	51
	%	22.0	25.0	18.2	50.0	22.4
	소득기준액을 초과해서	응답 21	2	5	0	28
	%	11.3	12.5	22.7	0.0	12.3
	재산기준액(4,400만원)을 초과해서	응답 8	1	0	0	9
	%	4.3	6.3	0.0	0.0	3.9
	호적상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	응답 13	0	2	0	15
	%	7.0	0.0	9.1	0.0	6.6
	기타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응답 33	2	7	1	43
	%	17.7	12.5	31.8	25.0	18.9
	자존심 때문에	응답 4	1	0	0	5
	%	2.2	6.3	0.0	0.0	2.2
	기타	응답 16	2	1	0	19
	%	8.6	12.5	4.5	0.0	8.3
전체	응답	186	16	22	4	228
	%	100.0	100.0	100.0	100.0	100.0

⑦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표 4-54〉 장애유형별로 응답한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생활 보호 사업 비수혜 이유	지원액이 부족하여	응답	162	14	15	4	195
		%	48.4	60.9	29.4	44.4	46.7
	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응답	99	4	21	2	126
		%	29.6	17.4	41.2	22.2	30.1
	신청 및 수급행정 절차가 까다로워	응답	59	4	10	2	75
		%	17.6	17.4	19.6	22.2	17.9
기타	응답	15	1	5	1	22	
	%	4.5	4.3	9.8	11.1	5.3	
전체	응답	335	23	51	9	418	
	%	100.0	100.0	100.0	100.0	100.0	

⑧ 생활보호사업의 전반적 평가

생활보호사업에 대하여 응답자 평균 69.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체장애우의 경우가 더 많아 72.7%, 다음이 청각 및 언어장애우 62.8%, 이어 시각장애우 62.0%,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 56.0%의 순으로 인지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여전히 정신지체 장애우가 지닌 정보의 불충분성이 또한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사업을 알고 있는 자중 실제 생활보호사업을 신청하는 정도는 정신지체장애우가 매우 높아 인지하고 있는 장애우 중 78.6%가 신청한 상태이며, 이에 비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신청율이 막상 58.1% 밖에 되지 않아 가장 낮은 신청율을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활보호사업 가운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보다는 원래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한 자 가운데 모두 생활보호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70%대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응답대상이 된 모든 장애우를 놓고 볼 때 지체장애우는 그중 45.3%가,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30.2%, 시각장애우는 35%,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는 32%만이 최종적으로 생활보호사업의 수급자가 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들의 지원액 수준은 지체장애우가 평균 19.4만원, 청각 및 언어장애우 15.5만원, 시각장애우 20.3만원, 정신지체 17.3만원 등이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말하는 그 이유로는 보통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지 몰라서',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등이 있으나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절차가 까다로운 것에 대하여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정신지체의 경우는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모르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생활보호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것, 다음으로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

이 까다롭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경우는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60.9%의 응답자에 의하여 가장 문제점인 것으로 압도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2) 공공근로사업

① 공공근로사업 인지도

〈표 4-55〉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 인지도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근로 사업인지 여부	안다	응답	384	31	73	13	501
		%	78.9	73.8	74.5	52.0	76.8
모른다	응답	103	11	25	12	151	
	%	21.1	26.2	25.5	48.0	23.2	
전체	응답	487	42	98	25	65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공공근로사업 신청여부

〈표 4-56〉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 신청여부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근로 사업신청 여부	신청	응답	138	14	25	6	183
		%	29.3	35.9	26.9	27.3	29.3
미신청	응답	333	25	68	16	442	
	%	70.7	64.1	73.1	72.7	70.7	
전체	응답	471	39	93	22	625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표 4-57〉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항 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근로 사업참여 여부	참여함	응답	46	4	6	2	58
		%	31.1	36.4	23.1	28.6	30.2
	신청하였으나 탈락	응답	85	6	19	5	115
		%	57.4	54.5	73.1	71.4	59.9
중도포기	응답	17	1	1	0	19	
	%	11.5	9.1	3.8	0.0	9.9	
전체	응답	148	11	26	7	19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표 4-58〉 장애유형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항 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근로 사업을 신 청하지 않 은 이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응답	46	4	10	3	63
		%	12.5	14.3	14.5	16.7	13.1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	응답	62	3	8	4	77
		%	16.9	10.7	11.6	22.2	16.0
	신청해도 연봉이 낮아	응답	34	3	3	2	42
		%	9.3	1.7	4.3	11.1	8.7
	일의 내용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응답	3	0	0	0	3
		%	0.8	0.0	0.0	0.0	0.6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	응답	199	13	40	8	260
		%	54.2	46.4	58.0	44.4	53.9
	일이 계속 없는 것이 아니라서	응답	11	2	1	0	14
		%	3.0	7.1	1.4	0.0	2.9
	기타	응답	12	3	7	1	23
		%	3.3	10.7	10.1	5.6	4.8
전체	응답	367	28	69	18	48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76.8%를 보이지만 정신지체의 경우는 52.0%에 불과하여 이 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함을 나타낸다.

이 사업에 신청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29.3%에 해당하고 특히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신청율을 보여 35.9%를 보이며 나머지 장애유형에서는 20%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알면서도 이에 혜택을 보고 있는 자는 30.2%가 평균이며 이중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36.4%, 지체장애우 31.1%, 정신지체장애우 28.6% 등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은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유형별로 전체 설문자 가운데 지체 장애우는 9.8%만이,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10.3%만이, 시각장애우는 6.5%만이,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는 9.1%만이 공공근로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유형의 장애우가 '장애우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청각 및 언어장애우와 시각장애우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았으며 지체장애우와 정신지체장애우는 신청할 만한 자격이 안된다는 것에도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표시하였다.

3) 실업급여

① 실업급여 신청여부

〈표 4-59〉 장애유형별 실업급여신청 여부

항 목	유형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업급여 신청여부	현재 받고있다	응답	6	1	1	1	9
		%	4.4	8.3	7.7	25.0	5.5
	과거에 받았었다	응답	7	0	0	2	9
		%	5.2	0.0	0.0	50.0	5.5
	퇴직당시 적용대상 이 아니었다	응답	47	4	5	0	56
		%	34.8	33.3	38.5	0.0	34.1
	신청하였으나 가결당함	응답	10	1	2	0	13
		%	7.4	8.3	15.4	0.0	7.9
	신청하지않음	응답	65	6	5	1	77
		%	48.1	50.0	38.5	25.0	47.0
	전체	응답	135	12	13	4	164
		%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실업급여 받지 않는 이유

〈표 4-60〉 장애유형별 실업급여 받지 않는 이유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은, 거절당한 이유	직장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응답 33	3	1	0	37	
	%	32.4	30.0	10.0	0.0	29.8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응답 16	2	3	2	23	
	%	15.7	20.0	30.0	100.0	18.5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응답 9	1	1	0	11	
	지원자격이 안되어서	%	8.8	10.0	10.0	0.0	8.9
	고용보험의 내용을 몰라서	응답 24	2	2	0	28	
	%	23.5	20.0	20.0	0.0	22.6	
	신청하더라도 안될 것 같아서	응답 8	1	1	0	10	
	%	7.8	10.0	10.0	0.0	8.1	
권 취득할 것 같아서	응답 5	0	0	0	5		
%	4.9	0.0	0.0	0.0	4.0		
기타	응답 7	1	2	0	10		
%	6.9	10.0	20.0	0.0	8.1		
전체	응답	102	10	10	2	124	
%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유무

〈표 4-61〉 장애유형별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유무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유무	받은 적이 있다	응답 42	1	5	0	48
	%	9.8	2.9	5.6	0.0	8.4
받은 적이 없다	응답 7	0	1	1	9	
	%	1.6	0.0	1.1	5.0	1.6
무	응답 380	33	84	19	516	
	%	88.6	97.1	93.3	95.0	90.1
전체	응답	429	34	90	20	573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공공직업훈련 내용

〈표 4-62〉 장애유형별 공공직업훈련 현황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공공 직업 훈련 내용	실업자 재취업훈련	응답 8	0	1	1	10
	%	14.3	0.0	14.3	100.0	15.4
	고용촉진 훈련	응답 8	1	1	0	10
	%	14.3	100.0	14.3	0.0	15.4
	대학동업 훈련	응답 2	0	0	0	2
	%	3.6	0.0	0.0	0.0	3.1
	가능사 양성훈련	응답 9	0	1	0	10
	%	16.1	0.0	14.3	0.0	15.4
	영농희망자 훈련	응답 4	0	0	0	4
	%	7.1	0.0	0.0	0.0	6.2
	농어민고용 촉진훈련	응답 2	0	0	0	2
	%	3.6	0.0	0.0	0.0	3.1
	실직자 창업훈련	응답 2	0	1	0	3
	%	3.6	0.0	14.3	0.0	4.6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훈련	응답 18	0	2	0	20
	%	32.1	0.0	28.6	0.0	30.8
기타	응답 3	0	1	0	4	
%	5.4	0.0	14.3	0.0	6.2	
전체	응답	56	1	7	1	65
%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직업훈련 희망여부

〈표 4-63〉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희망여부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직업훈련 희망여부	그렇다	응답 240	16	32	11	299
		%	54.9	44.4	34.4	52.4
	아니다	응답 69	5	29	5	108
		%	15.8	13.9	31.2	23.8
	잘 모르겠다	응답 128	15	32	5	180
		%	29.3	41.7	34.4	23.8
전체	응답	437	36	93	21	587
%	100.0	100.0	100.0	100.0	100.0	

⑥ 희망 직업훈련내용

〈표 4-64〉 장애유형별 희망직업훈련 내용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희망직업 훈련내용	취업을 위한 훈련/교육	응답 %	41 16.3	2 11.8	9 30.0	3 33.3	55 17.9
	자영업자의 사업 능력 향상훈련	응답 %	43 17.1	2 11.8	5 16.7	0 0.0	50 16.3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응답 %	44 17.5	7 41.2	3 10.0	3 33.3	57 18.6
	근로자의 업무 능력향상훈련	응답 %	17 6.8	3 17.6	3 10.0	2 22.2	25 8.1
	컴퓨터 관련 교육	응답 %	90 35.9	3 17.6	6 20.0	0 0.0	99 32.2
	기타	응답 %	16 6.4	0 0.0	4 13.3	1 11.1	21 6.8
	전체	응답 %	251 100.0	17 100.0	30 100.0	9 100.0	307 100.0

⑦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설문대상 장애우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았었거나 현재 받고 있는 장애우는 전체의 2.7%인 18명 만이었다. 지체장애우는 모두 13명으로서 응답지체장애우의 2.6%,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2.3%, 시각장애우는 1.0%, 그러나 정신지체장애우는 12.0%에 해당하였다. 이외에도 퇴직 당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와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경우도 약간 있었다.

특히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직장이 고용보험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 고용보험의 내용을 잘 몰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라고 답한 경우도 지체장애우의 15.7%,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20.0%, 시각장애우의 30.0%나 되었다.

고용보험상의 급여 형태의 하나이면서 대량실업대책의 하나로서 실시되었던 공공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장애우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훈련을 받은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8.4%가 '받은 적이 있었다'에, 1.6%는 '현재 받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우의 11.4%가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오직 2.9%만이,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6.7%, 정신지체장애우는 5.0%만이 유경험자라고 답하였다.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장애우가 어떤 훈련을 거쳤는지를 보면, 지체장애우는 복지관, 장애우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 32.1%, 이밖에 기능사양성훈련이나 실업자재취업훈련 등

을 받았다고 응답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출현빈도가 매우 낮아 유의미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한편 명백히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는 전체의 50.9%,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우가 54.9%, 정신지체장애우 50.9%, 청각 및 언어장애우 44.4%, 그리고 시각장애우 34.4%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각장애우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희망하는 직업훈련의 종류를 보면, 지체장애우는 컴퓨터관련교육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교육을, 시각장애우는 창업을 위한 훈련을,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는 창업교육과 임금근로자 양성교육을 각기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4) 실업자 대부사업

① 대부사업의 인지 여부

〈표 4-65〉 장애유형별 실업자 대부사업 인지여부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부사업 인지여부	알고있음	응답 %	247 50.9	23 54.8	38 39.2	10 40.0	318 49.0
	모름	응답 %	238 49.1	19 45.2	59 60.8	15 60.0	331 51.0
전체	응답 %	485 100.0	42 100.0	97 100.0	25 100.0	649 100.0	

② 대부사업신청여부

〈표 4-66〉 장애유형별 대부사업 신청여부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부사업 신청여부	신청	응답 %	74 27.4	4 17.4	6 14.3	3 27.3	87 25.1
	미신청	응답 %	196 72.6	19 82.6	36 85.7	8 72.7	259 74.9
전체	응답 %	270 100.0	23 100.0	42 100.0	11 100.0	346 100.0	

③ 신청대부사업내용

〈표 4-67〉 장애유형별 신청대부사업내용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신청대부 사업내용	생활안정자금(생 계비,의료비)	응답	32	4	2	2	40
		%	40.0	100.0	40.0	66.7	43.5
	주택자금(전세금 융자포함)	응답	18	0	2	0	20
		%	22.5	0.0	40.0	0.0	21.7
	생업자금	응답	24	0	1	1	26
		%	30.0	0.0	20.0	33.3	28.3
	권리·기술·실업지원 소규모창업지원	응답	5	0	0	0	5
		%	6.3	0.0	0.0	0.0	5.4
	귀농자 정착지원	응답	1	0	0	0	1
		%	1.3	0.0	0.0	0.0	1.1
전체	응답	80	4	5	3	92	
	%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대부신청후 대출여부

〈표 4-68〉 장애유형별 대부사업 대출여부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부신청 후 대출여부	받은	응답	25	1	2	0	28
		%	29.1	20.0	40.0	0.0	28.3
	못받은	응답	61	4	3	3	71
		%	70.9	80.0	60.0	100.0	71.7
전체	응답	86	5	5	3	99	
	%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대출금액

〈표 4-69〉 장애유형별 대출금액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대출금액 300만원미만	응답	22	1	1	24
	%	100.0	100.0	100.0	100.0
전체	응답	22	1	1	24
	%	100.0	100.0	100.0	100.0

⑥ 대출받지 못한 이유

〈표 4-70〉 대출받지 못한 이유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출받지 못한 이유	담보가 없어서	응답	32	0	0	0	32
		%	45.7	0.0	0.0	0.0	39.5
	신용보증인이	응답	16	3	1	2	22
		%	22.9	75.0	25.0	66.7	27.2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2	0	0	0	2
		%	2.9	0.0	0.0	0.0	2.5
	재산세 과세액 초과	응답	1	0	1	0	1
		%	1.4	0.0	25.0	0.0	2.5
	신청서류의 자격요건 미달	응답	10	0	1	0	11
		%	14.3	0.0	25.0	0.0	13.6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3	1	0	0	4	
	%	4.3	25.0	0.0	0.0	4.9	
기타	응답	6	0	1	1	8	
	%	8.6	0.0	25.0	33.3	9.9	
전체	응답	70	4	4	3	81	
	%	100.0	100.0	100.0	100.0	100.0	

⑦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표 4-71〉 장애인별로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항 목	유형별	장 애 유 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부를 신 청하지 않 은 이유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몰라	응답	47	5	2	1	55
		%	19.3	26.3	5.6	12.5	18.0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6	0	0	0	6
		%	2.5	0.0	0.0	0.0	2.0
	자격요건이 안되서	응답	49	3	9	0	61
		%	20.2	15.8	25.0	0.0	19.9
	신청절차가 까 다롭고 힘들어	응답	76	1	7	4	88
		%	31.3	5.3	19.4	50.0	28.2
	상환부담때문에	응답	40	4	13	1	58
		%	16.5	21.1	36.1	12.5	19.0
별도움이 안될것 같아	응답	15	5	3	1	24	
	%	6.2	26.3	8.3	12.5	7.8	
기타	응답	10	1	2	1	14	
	%	4.1	5.3	5.6	12.5	4.6	
전체	응답	243	19	36	8	306	
	%	100.0	100.0	100.0	100.0	100.0	

⑧ 대부사업의 문제점

〈표 4-72〉 장애인별로 응답한 대부사업의 문제점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대부사업 의 문제점	대출금액이 너무 적음	응답 7	0	1	0	8
	%	2.5	0.0	2.6	0.0	2.3
	담보 조건 등이 너무 까다로움	응답 162	12	16	5	195
	%	58.3	50.0	41.0	71.4	56.0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응답 37	5	4	1	47
	%	13.3	20.8	10.3	14.3	13.5
	이자율이 높음	응답 12	2	3	0	17
	%	4.3	8.3	7.7	0.0	4.9
	대부분 상환까지의 기간이 짧음	응답 18	0	3	1	22
	%	6.5	0.0	7.7	14.3	6.3
	모르겠다	응답 38	5	7	0	50
	%	13.7	20.8	17.9	0.0	14.4
기타	응답 4	0	5	0	9	
%	1.4	0.0	12.8	0.0	2.6	
전체	응답	278	24	39	7	348
%		100.0	100.0	100.0	100.0	100.0

⑨ 대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장애우 가운데 대부사업을 아는 자는 지체장애우가 50.9%, 청각 및 언어장애우가 54.8%, 시각장애우 39.2% 및 정신지체장애우 40.4% 정도이다. 따라서 실업장애우중 반수정도는 대부사업자체를 알고 있다.

다만, 이를 신청한 경우는 매우 적어 설문한 지체장애우의 15.3%,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9.5%, 시각장애우의 6.2%, 정신지체장애우의 12.0%만으로 나타난다. 대부사업을 인지한 경우만을 따지면, 그중 지체장애우는 27.4%,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17.4%, 시각장애우는 14.3%, 정신지체장애우는 27.3% 등으로서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대부사업을 신청한 장애우들이 주로 이용한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안정사업자금과 생업자금으로 들 수 있는데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주택자금을 위한 대부도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 빈도 자체는 매우 작다.

대부신청에 이어 궁극적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청한 자 중 대개 30%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체장애우는 33.8%, 청각 및 언어장애우는 25.0%, 시각장애우는 33.3%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청한 후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이 300만원 미만이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체장애우가 담보가 없어 못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나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신용보증

인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구직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재산세 과세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아예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지체장애우의 경우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그리고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가장 많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의 경우는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상환부담 때문에,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신청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대부사업의 문제점은 재산요건으로서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꼽았으며, 이외에도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5) 새로운 정부프로그램

① 긴급의료비 지원

〈표 4-73〉 장애유형별 긴급의료비 지원 필요성

항 목	유형별	장애 유형				전체	
		지체	청각·언어	시각	정신지체		
긴급의료 비지원	매우 필요	응답 251	15	45	10	321	
	%	55.9	45.5	49.5	55.6	54.3	
	필요	응답 126	10	26	5	167	
	%	28.1	30.3	28.6	27.8	28.3	
	보통	응답 50	6	15	1	72	
	%	11.1	18.2	16.5	5.6	12.2	
	불필요	응답 15	2	4	1	22	
	%	3.3	6.1	4.4	5.6	3.7	
	전혀 불필요	응답 7	0	1	1	9	
	%	1.6	0.0	1.1	5.6	1.5	
	전체	응답	449	33	91	18	591
	%		100.0	100.0	100.0	100.0	100.0